



커뮤니티 가이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길잡이



**Kheir Clinic**  
이웃케어클리닉  
Kheir Community Clinic  
**Clínica Kheir**

커뮤니티 가이드:

#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길잡이

발행처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제작편집 이재희, 이보라

커버디자인 텐 애드버타이징(TEN Advertising)

도움 시더스 사이나이(Cedars-Sinai)

Ana Grande, Andrey Gordienko, LAUSD Teacher Hannah Kim,  
Sean Kim, Stella Kim, Reverend Yong Kim, Sang Moon LCSW,  
Robert Liles, Kirby Rock, Joanna Shin, Hansuk Yang, Ji In Yeo

펴낸곳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주소 3727 W. 6th St., Suite 210,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235-2800

웹사이트 [www.LAKheir.org](http://www.LAKheir.org)

저작권 (Copyright © 2022 by Kheir Clinic)

이 책의 저작권은 이웃케어클리닉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머리말 A Message from Kheir



이웃케어클리닉(구 건강정보센터, Kheir Clinic)이 '커뮤니티 가이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길잡이(Community Resource Guide: Navigating Healthy Aging for Seniors and Their Families)'를 펴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미국사회에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인사회도 은퇴한 이민 1세대가 늘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 이에 대한 준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고 또 필요해지는 정보가 미국의 의료·사회복지 혜택일 것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면서 아무래도 이들 혜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미국의 의료·건강보험 제도, 언어계약에 따른 정보의 한계, 안내 자료 및 기관 부족 등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이번 가이드는 시니어와 그 가족이 헤매지 않고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의료 및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시니어와 그 자녀, 가족 뿐만 아니라 중장년이 평소 궁금해하던 정보도 살뜰히 챙겼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친절히 안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복지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가이드를 읽으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충실했습니다. 평소 곁에 두고 언제든지 정보를 알려주는 친구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 가이드가 아무쪼록 시니어와 그 가족,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년층, 또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중년층에게까지 도움이 되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하는 즐거운 친구, 파트너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앞으로도 시니어와 그 가족,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친숙한 언어와 문화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커뮤니티 가이드 발간은 시더스-사이나이(Cedars-Sinai)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외 도움 주신 분들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2022년 5월  
이웃케어클리닉 소장 애린 박

2022년 5월

시더스-사이나이는 모두가 공정하게 의료 및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구조 변화와 기금 운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1월 건강 형평성을 위한 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웃케어클리닉과 협력, 공동 작업 끝에 '커뮤니티 가이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길잡이'를 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환자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언어장애, 문화차이,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사회취약층을 돕는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단체이자 리더입니다. 이번에 가이드를 내고 시니어와 그 가족 및 친인척, 보호자와 간병인, 친구와 지인이 더 쉽고 편하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다리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가이드에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에서부터 양로보건센터, 자택간병서비스, 식품보조, 저소득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담겨있습니다.

시더스-사이나이는 모두가 이 같은 정보와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이웃케어클리닉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더스-사이나이는 이 가이드가 앞으로 정보와 자료 안내 및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실제 시니어와 그 가족을 혜택 및 서비스와 더 쉽고 편하게 연결하길 기대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이웃케어클리닉의 리더십과 방향성, 이에 협조해준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진심을 담아,

시더스-사이나이  
커뮤니티 혜택 기부 부서(Community Benefit Giving Office)

# 목차

이웃케어클리닉은 (About Kheir: What We Do)	07
간병 제공 가정 (Adult Family Homes)	09
간병 제공 은퇴 커뮤니티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09
간병인 되기 (Becoming a Caregiver)	09
개별 및 의료 응급대응 시스템 (Personal/Med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	11
교통 및 통역 (Transportation & Interpreter)	12
단기 요양시설 (Skilled Nursing Facilities)	13
메디칼/메디케이드 (Medi-Cal/Medicaid)	14
메디케어 (Medicare)	25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Medical Directives)	33
사회보장 은퇴연금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 SSA)	33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	33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My Health LA: Medical Care for the Undocumented)	37
시니어 메디칼 (Senior Medi-Cal)	45
시니어 서비스 제공 기관 (Senior Services Organizations)	49
식사 서비스 (Senior Meal Services)	51

# Table of Contents

식품 보조 캠프레시 (CalFresh/Food Stamps)	52
아름다운 마무리 - 죽음 준비 (End of Life Planning)	59
안전한 약 복용 (Medication Safety)	60
양로보건센터/커뮤니티 기반 성인 서비스 (Adult Day Health Care - ADHC/Community-Based Adult Services - CBAS)	61
양로시설 (Assisted Living Facilities)	62
여성암 검진 프로그램 (Every Woman Counts - EWC: Breast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Program)	63
응급 메디칼 (Emergency Medi-Cal)	64
이민가정을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 CAPI)	65
임신 메디칼 (Pregnancy Medi-Cal)	66
자택 간병 서비스 (In-Home Supportive Services - IHSS)	66
장기 요양시설 (Long Term Care Facilities)	68
장례 계획 (Funeral Accommodations)	68
저소득층 아파트 (Affordable Low-Income Housing)	70
치매 전문 요양시설 (Memory Care Units)	75
호스피스 (Hospice Care)	75
이웃케어클리닉 위치 (Kheir Locations)	78

# 이웃케어클리닉은 About Kheir

이웃케어클리닉(구 건강정보센터, Kheir Clinic)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지역주민·저소득층·무보험자·소외계층 취약계층에게 의료, 사회복지,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클리닉이자 비영리 단체입니다. 언어제약, 문화차이, 경제적 난관에 처한, LA 한인타운 지역의 이민자와 주민이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 참전한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이 주축이 돼 1986년 설립됐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한인건강정보센터, 영어로는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Referral (KHEIR) Center'라는 이름으로 한인 이민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연결하는 다리역할에 주력했으며 당시 진료실 1개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지금은 이민자와 지역주민의 주치의가 돼 커뮤니티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의료서비스(클리닉), 복지서비스(환자지원부, PRD), 시니어서비스(양로보건센터, ADHC), 저소득층 주거 지원 등 크게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6곳에서 주치의의 일반 진료, 부인과와 소아과·위장내과·발병학·물리치료 등의 인하우스 전문의 진료, 치과와 검안과 진료,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각종 의료 및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와 상담, 신청 지원, 시니어 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벵골어(방글라데시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하며 한인에서 나아가 모든 인종·민족 커뮤니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한인 커뮤니티 클리닉으로는 처음 연방정부(HHS HRSA) 인증 의료기관(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FQHC)으로 선정돼 연방정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미품질보증위원회(NQCA)의 환자중심 의료기관(Patient Centered Medical Home·PCMH) 인가를 받아 환자 위주의 맞춤,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 시작한지 30년 가까이 되는 한인 암환자 서포트그룹은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 모임이며 이웃케어클리닉 부속 양로보건센터는 1990년 대부터 한식을 제공하는 등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을 위해 언어와 문화 맞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이웃케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는 연 1만 9000명, 진료건수는 연 8만 건이 넘을 만큼 한인사회,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취향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LA 지역 주민과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욱 쉽고 편하게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개방하고 혜택을 확대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간병 제공 가정 Adult Family Homes

가정집에서 이뤄지는 간병서비스입니다. 보통 4명의 환자를 1~2명의 간병인이 관리하고 최대 6명의 환자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양로 또는 요양 시설보다는 비용 부담이 덜할 수도 있지만, 직원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밀착 관리는 힘듭니다. 또 메디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 간병 제공 은퇴 커뮤니티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이용하며 단독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사회 복지사(소셜워커)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메디칼로 커버되지 않으며 초기비용은 평균 32만~100만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 간병인 되기 Becoming a Caregiver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간병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인사회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한인 간병인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장에서는 간병서비스 신청방법과 간병인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간병인이 되기 위한 필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자, 시민권자, 노동허가서(워크퍼밋)를 소지한 영주권 신청자
-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
- 나이 제한 없음
- 유효한 이메일 주소

간병인이 되고 싶다면 신청, 오리엔테이션, 등록, 신원조회(라이브스캔) 과정을 모두 밟아야 합니다. 먼저, LA 카운티 IHSS 사무실(888-822-9622, 한국어 7번)에 전화해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고 상담원과 통화하면 됩니다. 연결된 상담원이 한국인이 아닐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간병인, 즉 간병서비스 제공자(IHSS provider 또는 caregiver)가 되고 싶다고 하면 담당자가 개인 정보와 이메일 주소 등을 물어봅니다. 모든 교육 안내와 정보가 신청자 이메일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원할 경우 모든 정보와 자료를 한국어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자료(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디오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및 동영상과 안내서 등을 한국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간병인으로서 해야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 근무시간 외 수당(오버타임) 계산, 근무시간 기록(타임시트) 작성법 등을 설명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 SOC426과 SOC846 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했고 본인은 간병인이 되고자 정부에 신청하고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작성을 완료한 서류는 신분증(ID), 소셜시큐리티카드 사본과 함께 본인 주소지 관할 IHSS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서류를 보내고 나면 신원조회(Live Scan) 요청 양식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계약 업체에 본인이 찾아가 신원조회를 마쳐야 합니다. 조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업체마다 적게는 30 달러 부터 많게는 75 달러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신원조회 계약 업체는 간병인 안내 이메일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신원조회 기간은 1~2 개월 걸립니다.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본인이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공식 편지가 우편 배달됩니다. 그때부터 신청자는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고, 공식 편지를 받기 3 개월 전까지 간병인으로 일했던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IHSS 서비스에 대한 시급을 받기 위해서는 W-4 양식과 DE-4 양식 2 가지를 모두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W-4 는 연방정부, DE-4 양식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간병인이 되고난 후, 간병이 필요한 수혜자는 정부에서 따로 소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하며 수혜자를 찾고 있는 경우, 이웃케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간병인 시급은 얼마인가요? 최대 몇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간병인의 시급은 2022 년 기준 평균 15 달러입니다.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주일에 최대 66 시간, 한달에 264 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그 이상 일할 경우 경고를 받게 됩니다. 1 년 동안 3 번 경고를 받으면 1 년 동안 간병인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1년에는 다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병인 일을 하지 않고 1 년 이상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 간병인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간병인 보험은 한달에 74 시간 이상 2 달 연속으로 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IHSS 보험플랜으로 전화(855-727-2756)해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간병인 보험은 메디칼 혜택과 비슷합니다. 보험료는 월 1달러, 코페이는 5달러 정도로 저렴합니다. LA 카운티 간병인 보험회사는 모두 LA 케어(LA Care)입니다. 다만, 간병인 보험은 주치의가 보통 카운티와 연계된 대학병원(LAC-USC) 소속 의사인데, 정해진 주치의에게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병인노조 웹사이트([www.pascla.org](http://www.pas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응급대응 시스템/의료 응급대응 시스템 PERS/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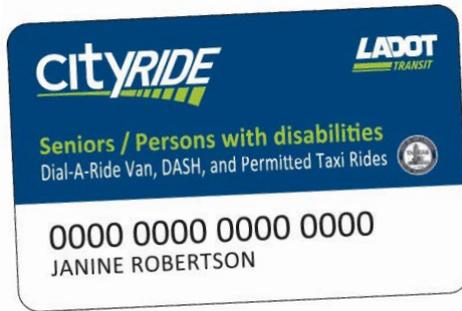
혼자 살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인공지능(AI) 로봇과 연계된 의료 시스템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PERS(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s)나 MERS (Medical Emergency Response Systems) 같은 응급 시스템은 넘어지거나 행동, 혈압, 심박수에 갑자기 큰 변화가 있을 때,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911과 연결합니다. 치매 노인을 위한 부착 가능한 위치 파악 기기(GPS)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 습도, 화재 및 가스 누출 감지, 출입문 열림 등의 정보를 가족이나 의료기관에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응급 안심 시스템에 관련된 웹사이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www.comfortkeepers.com
- www.seniorsafety.com
- www.helpbuttonsusa.com
- www.medihiill.com

또 인터넷에서 PERS 나 MERS를 검색하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교통 및 통역 Transportation / Interpreter

교통 및 통역 Transportation / Interpreter LA시 노인국(Department of Aging·DOA)과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DOT)은 65세 시니어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카드(CityRid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라이드 수혜자는 LA시가 허가한 택시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신분증(ID)과 시티라이드 교통카드만 보여주면 DASH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구매는 분기별로 할 수 있습니다.



시티라이드 교통카드 견본 <출처: LA교통국(LADOT)>

1인 탑승 시에는 1~10마일 운행당 2~4달러(2022년 기준), 1인 이상 탑승 시에는 2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시티라이드는 온라인(<https://register.cityride.net>)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고 전화(213-808-7433) 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시티라이드를 비롯한 노인국의 모든 복지 프로그램은 전화(800-510-2020, 한국어 3번)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리퍼를 받았는데 이 전문의가 한인이 아닐 경우, 진료에 통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역은 보험회사를 통해 미리 요청하고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 환자의 경우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해 진료 날짜와 시간, 진료 과목을 알려주고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 단기 요양시설 Skilled Nursing Facility/Nursing Home

한인들은 양로병원(너싱홈)이라 합니다. 짧은 기간, 최대 10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3일 연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치료 내용을 증명하면 메디칼에서 전액 비용이 지원됩니다. 아래 시설은 이웃케어클리닉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름	주소/전화번호	한인여부
그랜드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A, CA 90057 전화: 213-382-7315	간호사
벌링턴 양로병원 Burlington Convalescent Hospital	845 S. Burlington Ave. LA, CA 90057 전화: 213-381-5585	직원
브라이얼오크 재활양로병원 Brier Oak on Sunset	5154 W. Sunset Blvd. LA, CA 90027 전화: 323-663-3951	간호사, 직원
선레이 양로병원 Sun Ray Senior Club	3210 W. Pico Blvd. LA, CA 90019 전화: 323-734-2171	간호사, 직원
올림피아 양로병원 Olympia Convalescent Hospital	1100 S. Alvarado St. LA, CA 90006 전화: 213-487-3000	간호사, 직원
알콧 재활 양로병원 Alcott Rehabilitation Hospital	3551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737-2000	간호사, 직원
아든 테라스 양로병원 Alden Terrace Convalescent	1240 S. Hoover St. LA, CA 90006 전화: 213-382-8461	간호사, 직원
중앙 양로병원 Mid-Wilshire Health Care Center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전화: 213-483-9921 626-607-6478	간호사, 직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 방문이 중요합니다. 낮과 저녁 각기 다른 시간에 여러 번 방문해 시간대마다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욕을 늦게 하거나 약을 늦게 먹으면 이를 야간(오버나이트) 서비스로 간주해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본 비용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시니어를 위한 유용한 웹사이트

시니어를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찾을 때,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www.eldercare.acl.gov**

집 우편번호(집코드)나 사는 도시를 입력하면 시니어와 관련된 법률기관, 노인국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LA를 검색하면 LA시 노인국 (Department of Aging)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medicare.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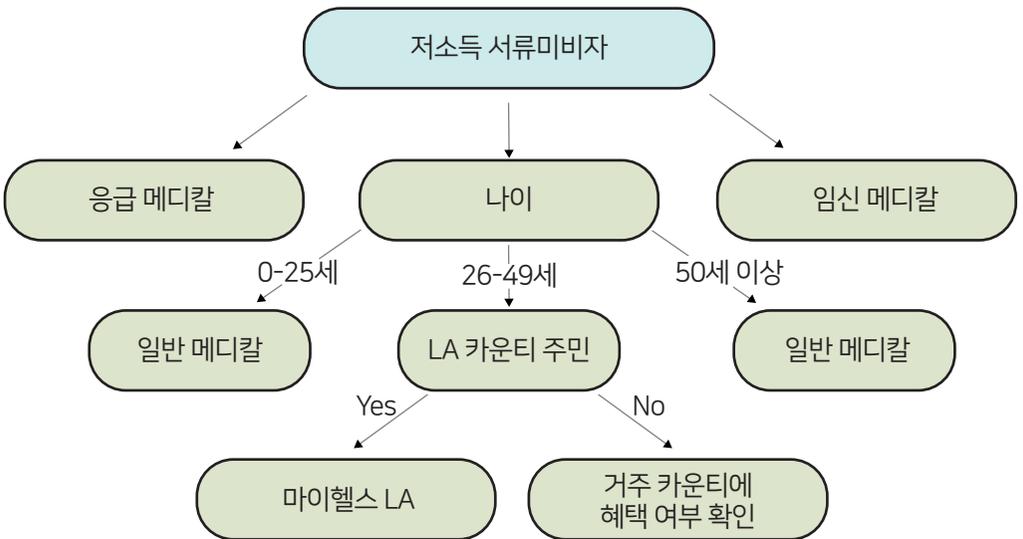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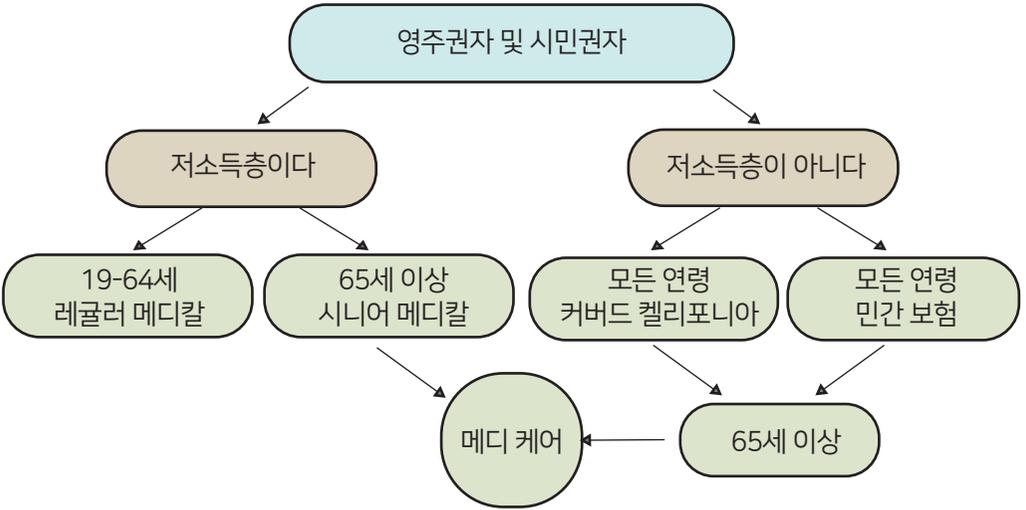
너싱홈이나 호스피스, 닥터 오피스, 병원까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우편번호나 도시를 입력하고 어떤 종류의 시설을 비교, 분석하고 싶은지 고르면 됩니다. 특정 전문분야의 병원이나 의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메디칼/메디케이드 Medi-Cal/Medicaid

## 메디칼이란

메디칼은 캘리포니아 주가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내 모든 50개 주에는 메디칼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주에서는 메디케이드(Medicaid)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메디케이드와 캘리포니아를 합쳐 메디칼(Medicaid + California)이라고 합니다. 메디칼은 크게 일반(레귤러) 메디칼, 아동 메디칼, 시니어 메디칼, 응급 메디칼, 그리고 임신 메디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메디칼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한 도표입니다.



## 메디칼의 종류

메디칼에는 일반(레귤러) 메디칼, 시니어 메디칼, 응급, 임신 메디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메디칼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 신청자격

- 캘리포니아 주민(이웃케어클리닉을 통해 신청할 경우, LA 카운티 주민)
-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메디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셜번호가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25세 이하 서류미비자 혹은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DACA)여도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22년 5월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소득

메디칼을 신청하려면 저소득층 기준에 본인 소득이 맞아야 하는데 2022년 저소득층 기준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9~64세 성인은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여야 하며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는 세금 공제 전(Gross) 소득을 대입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계산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김씨의 한달 소득이 세금 공제 전 1,400달러라고 가정하면, 김씨는 저소득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없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2인 가구에 해당되는데 본인 한달 소득이 1,000달러, 남편의 한달 소득이 1,5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부부 소득을 합쳐 한달 소득은 2,500달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준을 넘게 됩니다. 마지막 예로 올해로 열살된 아들을 둔 부부, 즉 3인 가정의 경우, 아들을 메디칼에 가입시키고 싶다면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8 페이지 참조



**한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세금보고서를 소득 증명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최대 3 개월치 소득을 합한 뒤 평균을 내 그 액수를 월소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급여 명세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엔 어떻게 소득을 증명하나요?**

고용주에게 요청해 급여를 명시한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 편지에는 직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이 하루에 몇시간,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한달에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고용주 서명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메디칼을 신청할 때 소득이 아예 없을 경우, 언제부터 소득이 없었고 현재 생활비는 어떻게 충 당하는지 상세히 적은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지에는 본인 이름과 날짜,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이민신분

메디칼 신청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T 비자나 U비자(인신 매매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나 주재원 비자 또는 서류미비자(25세 이하, 50세 이상은 예외)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영주권 신청은 들어갔는데 아직 인터뷰 전입니다. 메디칼 신청이 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USCIS)이 발급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됐다는 확인증(I-797)이 있어야 합니다.

## 메디칼 신청방법

본인이 위의 메디칼 자격에 모두 부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메디칼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 신분증(ID)
- 소셜시큐리티카드
- 체류신분 증명 서류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영주권 카드 또는 시민권 증서 또는 출생신고서)
- 소득 증명 서류(세금보고서, 최근 45일 이내에 받은 급여 명세서 등)

응급 또는 임신 메디칼 등을 신청하는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증이나 체류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영사관이 발급한 신분증(ID)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신청은 LA카운티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DPSS)으로 전화 866-613-3777, 한국어 라인 9 번)하거나 신청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http://www.benefitscal.com))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은 LA카운티 주민일 경우 메디칼 신청과 주치의 지정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메디칼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연방생활보조금(SSI)을 받고 있다면 메디칼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SSI 수혜자격은 65세 이상이거나 신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이며 SSI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9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메디칼 신청 후 절차

메디칼 당국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지 보통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메디칼 신청 후 약 한달 동안 집으로 각종 통지서와 안내서가 우편 배달됩니다. 가장 먼저 받게 되는 편지는 메디칼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각종 편지의 오른쪽 상단에는 본인 메디칼 케이스(case)를 담당하는 소셜워커(영어로는 caseworker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메디칼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사를 해서 주소를 변경해야 하거나, 또는 메디칼을 중단하고 싶을 때 이 담당 소셜워커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케이스 번호와 핀 번호(Pin Number)입니다. 이 두 고유번호는 메디칼 신청 후 처음 받는 편지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편지들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메디칼 카드(Benefits Identification Card·BIC)가 배송됩니다.



메디칼 카드 견본 <출처: 메디칼 회원 핸드북>

메디칼이 중단돼 다시 신청한 경우, 즉 메디칼 카드를 이미 한번 받았으면 카드가 새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기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국에 재발급에 대해 문의, 신청하면 됩니다.

간혹 메디칼 카드에 적힌 발급날짜(Issue Date)가 오래돼 새 날짜로 재발급 받고 싶다고 문의하는데, 발급날짜는 유효기간과 상관없기 때문에 기존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메디칼은 1년에 한번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한다고 해서 새 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건 하얀색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는 진료와 처방약을 커버할 보험 플랜과 메디컬그룹, 주치의를 정하는 신청서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류에 나온 보험플랜을 선택하면 귀하는 해당 플랜에 속한 병원이나 의사, 약국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고르고, 메디칼 환자를 받는 주치의를 누구로 할지 정했다면, 해당 주치의 또는 클리닉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코드는 본인이 정한 의사에게 전화해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웃케어클리닉 코드는 926K5MH이며 내부용 코드는 6T9입니다. <양식 참조>

# 메디칼 플랜 선택 양식 Medi-Cal Choice Form



Mail form back to: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P.O. Box 989009 • W. Sacramento, CA 95798-9850

## Medi-Cal Choice Form

Use this form to join or change plans. For help, call 1-800-430-4263.  
Please print. Fill in the ovals  to indicate your choice.

1) Head of Household Name (First Name) \_\_\_\_\_ 2) Last Name \_\_\_\_\_  
3) Home Address (House Number, Street Name, Apartment Number) \_\_\_\_\_  
4) City \_\_\_\_\_ 5) Zip Code \_\_\_\_\_ 6) Area Code & Phone Number \_\_\_\_\_  
7) E-mail Address \_\_\_\_\_

**Choose a plan and a plan partner from the list below. See the provider directory for Doctor/Clinic Codes.**

8) Applicant's Name (First Name) \_\_\_\_\_ 9) Last Name \_\_\_\_\_  
10) Sex  Male  Female 11) Due Date (if pregnant) \_\_\_\_/\_\_\_\_/\_\_\_\_ 12) Birth Year \_\_\_\_-\_\_\_\_-\_\_\_\_ 13) Social Security Number \_\_\_\_\_

**14) I wish to JOIN or change my plan to:**

- |  |   |
|--|---|
| <input type="radio"/> 304 L.A. Care Health Plan      | <input type="radio"/> 352 Health Net Comm Solutions |
| <input type="radio"/> BC Anthem Blue Cross Partnrshp | <input type="radio"/> HN Health Net Comm Solutions  |
| <input type="radio"/> BL Blue Shield Promise         | <input type="radio"/> MO Molina Healthcare Partner  |
| <input type="radio"/> KA KP Cal, LLC                 | <input type="radio"/> 000 Regular MediCal (FFS)     |
| <input type="radio"/> LA L.A. Care Health Plan       |   |

15) Doctor/Clinic Code 9 2 6 K 5 M H Internal Use 6 T 9

**16) Fill in the oval next to the reason for changing your plan.**

- |  |   |
|--|---|
| <input type="radio"/> I could not choose the doctor I wanted | <input type="radio"/> Moving out of the county        |
| <input type="radio"/> The plan did not meet my needs         | <input type="radio"/> Indian Health Program Exemption |
| <input type="radio"/> My doctor did not meet my needs        | <input type="radio"/> Exempt from a plan              |
| <input type="radio"/> Too far to go                          | <input type="radio"/> Other                           |
| <input type="radio"/> I did not choose this plan             |   |

**Notice:** I have read the plan description. I understand that Kaiser requires the use of binding neutral arbitration to resolve certain disputes. This includes disputes about whether the right medical treatment was provided (called medical malpractice) and other disputes relating to benefits or the delivery of services. If I pick Kaiser, I give up my right to a jury or court trial for those certain disputes. I also agree to use binding neutral arbitration to resolve those certain disputes. I do not give up my right to a State hearing of any issue, which is subject to the State hearing process.

**Choice Statement:** I/We have made written choice to receive Medi-Cal benefits through the plans as I/we have indicated on this form. I/We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We understand that in order to change my/our current Medi-Cal plan, I/we must complete this form.



\_\_\_\_\_  
Head of Household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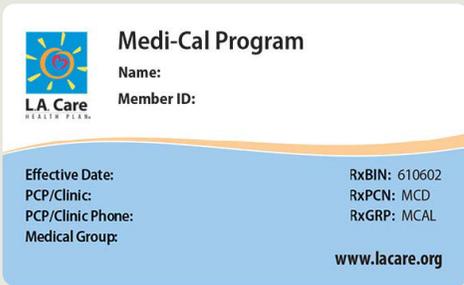
\_\_\_\_\_  
Date

Highly Confid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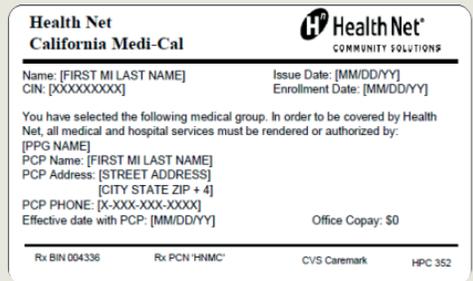
LA\_OVM3451\_ENG\_0617

그 다음 서류에 서명한 뒤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때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종종 메디칼 당국 산하 헬스케어옵션(HCO)에서 가입자에게 직접 전화해 플랜 및 주치의 지정절차를 돕기도 합니다. 이때 전화상으로 등록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해도 됩니다. 만약 30 일 안에 책자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보내지 않을 경우, 메디칼 당국이 무작위로 플랜과 가입자의 집 근처에 있는 의사로 주치의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도록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각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등록하고 보험플랜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카드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플랜이 커버하는 처방약을 제공하는 약국이 카드 제시를 요구합니다. 보험플랜 카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LA 케어 플랜카드



헬스넷 플랜카드

**?** 보험플랜과 주치의를 지정하는 서류를 보냈는데 아직 보험회사로부터 회원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카드를 받을 때까지 진료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카드를 받지 못했더라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 진료나 처방약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의 리퍼가 어려울 수 있고, 약 처방을 받아도 막상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 이미 정한 플랜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네, 플랜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플랜 변경은 헬스케어옵션(HCO, 한국어 라인 800-576-6883)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바꾸고 싶은 보험 플랜 네트워크 안에 현재 주치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전문의 리퍼를 받아둔 상태에서 플랜을 바꾸게 되면, 바뀐 플랜 내에 있는 전문의로 다시 리퍼를 받아야 합니다

## ? 정해진 주치의를 바꿀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바꾸고 싶은 주치의가 메디칼을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칼을 받을 경우, 그 주치의에게 클리닉 코드나 의료인(NPI) 번호를 달라고 한 후, 보험회사 에 전화해 바꾸면 됩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으로 주치의를 바꾸고 싶은 경우, 6가 클리닉 (3727 W. 6th St., Suite 230)을 방문하면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혜택 유지 및 갱신

메디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우편 배달되는 갱신 서류를 놓치지 말고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갱신 서류는 65세 전과 후로 양식이 다른데, 65세부터 받게 되는 갱신 양식에서 이전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재산에 대해 묻는 항목입니다. 양식에 나온 재산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증명 서류를 갱신 양식과 같이 보내면 됩니다. 또 다음과 같은 양식을 추가로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양식은 캘리포니아 보건국 웹사이트([www.dhcs.ca.gov/formsandpubs/forms/Pages/MCEDFormsKorean.aspx](http://www.dhcs.ca.gov/formsandpubs/forms/Pages/MCEDFormsKorean.aspx))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 갱신은 웹사이트([www.enefitscal.com](http://www.enefitscal.com))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추가정보 양식 MC 604 IPS FORM



State of 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 MEDI-CAL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추가 정보

저희는 아직 귀하의 Medi-Cal 자격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 가구에 속하는 모든 분에 대해 아래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이에에는 귀하, 귀하의 배우자, 귀하와 함께 사는 21세 미만의 자녀, 유학이나 일 등의 사유로 귀하의 가구에 일시적으로 부재 중이거나 입원 중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케이스 이름: \_\_\_\_\_

케이스 번호: \_\_\_\_\_

사회복지사 성명: \_\_\_\_\_

사회복지사의 전화번호: \_\_\_\_\_

발송일: \_\_\_\_\_

이 양식 제출일: \_\_\_\_\_

### 가구에 대해 필요한 추가 정보

다음의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의 질문이 귀하 또는 귀하 가구의 구성원에게 해당될 경우에만 답을 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 가구의 구성원이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지만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 여기에 체크를 하십시오.  
박스에 체크를 하셨으면, 배우자와 별거 중인 그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_\_\_\_\_

귀하 또는 귀하 가구 구성원이 수양 부모일 경우 여기에 체크를 하십시오.

이 박스에 체크를 하셨으면, 아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수양 부모의 성명: \_\_\_\_\_

이 수양 부모의 자녀: \_\_\_\_\_

\_\_\_\_\_

가구의 구성원이,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서 같은 가구에 살고 있는 친척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는 자녀인 경우,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이 박스에 체크를 하셨으면, 아래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돌봐주는 친척의 성명: \_\_\_\_\_

보살핌을 받고 있는 자녀: \_\_\_\_\_

\_\_\_\_\_

## 자주 묻는 질문 Q&A

**?** 캘리포니아 거주민이고 메디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로 여행을 가서 필요할 경우,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메디칼로 타주에서 치료받을 때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어전트케어 치료는 가능하지만 일반/주치의 진료나 전문의 진료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저는 보험이 없고 남편만 5년 전에 메디칼을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메디칼 혜택을 받고 싶은데 사회복지국에 따로 신청하면 되나요?

부부는 메디칼 케이스가 한 어카운트로 묶입니다. 이 때문에 부부 중 한명이 이미 메디칼 가입자라면, 다른 한명은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추가 등록만 하면 됩니다. 추가 등록은 기존 메디칼 케이스를 담당하는 소셜워커나 사회복지국(866-613-3777, 한국어 서비스 9번)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됩니다.

**?** 제 메디칼에 본인 부담금(Share of Cost, SOC)이 있다며 매달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본인 부담금은 메디칼을 무료로 이용하기에는 수입이 메디칼이 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SOC가 있는 경우, 매달 이 비용을 본인이 지급해야 나머지 비용을 메디칼이 커버해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이 월 200달러이고 의료비가 350달러가 나왔다면 본인이 200달러를 내고 메디칼 당국이 나머지 150달러를 부담하게 됩니다.

**?** 대학생 딸이 학교보험과 메디칼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방학 때 집 근처에 있는 주치의에게 메디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메디칼로 진료를 원할 경우, 학교보험 혜택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다는 취소편지(Termination Letter)가 필요합니다. 편지는 보험회사가 발급합니다.

# 메디케어 Medicare

## 메디케어란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65세 미만이어도 특정 장애나 영구 질환이 있다면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지만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납세자가 낸 세금을 해당 납세자가 은퇴한 후 의료비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는 4개 파트로 구성돼 있고, 각각의 혜택도 다릅니다.

## 종류 및 혜택

종류	혜택
파트 A-병원보험	수술비 및 입원비 커버. 전문 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이나 호스피스 등에 대해서는 비용 일부만 커버
파트 B-의료보험	일반 및 전문의 진료, 각종 예방 접종 및 검사, 물리치료 등 커버
파트 C-어드밴티지 플랜	메디케어 당국(CMS)이 승인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모두 있는 가입자만 선택 가능. 플랜에 따라 A, B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치과, 안경, 침술, 보청기 등)에 대한 혜택 제공
파트 D - 처방약 보험	처방약 비용 지원. 약 종류에 따라 일부 지원

메디케어 파트 B는 일반 진료, 정기 검진, 각종 검사와 암 예방검사 등을 대부분 무료 제공합니다. 치과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해외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응급진료를 제외하고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파트 A와 B를 가리켜 오리지널 플랜이라 합니다. A와 B가 의료비의 80%까지만 커버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은 메디칼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MSP)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파트 C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플랜이 PPO(주치의를 지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 및 클리닉에 연락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플랜)와 HMO(주치의를 지정해 리퍼를 받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플랜)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파트 C는 HMO 플랜만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플랜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의 경우 혜택범위가 공통되지 않고 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처방약 커버 범위와 비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트 D의 경우, 파트 A나 B 중 하나만 있어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파트 C에 가입할 경우 처방약도 커버됩니다.

## 가입기간 및 자격요건

다음은 파트별 가입기간과 자격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종류	가입기간 및 자격요건
파트 A - 병원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생일 3개월 전후, 즉 7개월 동안</li> <li>• 생일 한달 전에는 가입해야 65세 되는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li> <li>• 근로 크레딧 40점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됨. 40점이 되지 않을 경우, 크레딧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함</li> <li>• 파트 A는 가입하지 않고 파트 B 만 가입 가능</li> </ul>
파트 B - 의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가입기간은 파트 A와 같이 65세 생일 3개월 전후</li> <li>• 가입을 놓친 경우, 해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 가능.</li> <li>• 단, 혜택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적용. 특히 가입이 늦어진 기간 만큼 벌금(1년에 보험료가 10%씩 인상)</li> <li>• 세금보고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li> </ul>
파트 C - 어드밴티지 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생일월 3개월 전후, 총 7개월 동안 첫 가입 (IED)가능. 이미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한 경우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AED) 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GED) 사이에 파트 C로 변경 가능</li> <li>• 보험료는 플랜 및 커버리지에 따라 다름</li> </ul>
파트 D - 처방약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생일 전후 3개월</li> <li>• 이 기간을 놓치면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기간에서 늦어진 개월 수만큼 평생 벌금(월 보험료의 1%, 일년에 12%에 해당)을 물어야 함</li> <li>• 보험료는 플랜 및 커버리지에 따라 다름</li> </ul>

파트 A와 B, 그리고 D의 가입 기간은 65세가 되는 생일 전후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라면, 2월부터 8월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A의 경우 근로 크레딧이 40점 이상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크레딧이 모자르면 점수와 개인 상황에 따라 매달 내는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파트 B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10%, 파트 D 역시 월 보험료의 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직원 20인 이상의 직장이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나 은퇴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직장보험이 중단되거나 혜택이 끊기는 순간부터 8개월 이내에 파트 B에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메디케어 가입의 기본 요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상 된 합법적인 거주자입니다. 다음은 65세 이상/이하에 따른 자격요건입니다.

나이	자격요건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 크레딧 40점 이상*</li> <li>• 미국에 5년 이상 연속 거주</li> <li>• 사회보장은퇴연금(SSA) 수혜자(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메디케어 혜택 받음)</li> </ul>
65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4개월 동안 장애보험 및 연금을 받은 경우</li> <li>• 신장투석 환자, 만성 신부전 환자, 루게릭 환자</li> <li>• 본인은 62세 이상이지만 65세 이상인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40점 이상인 경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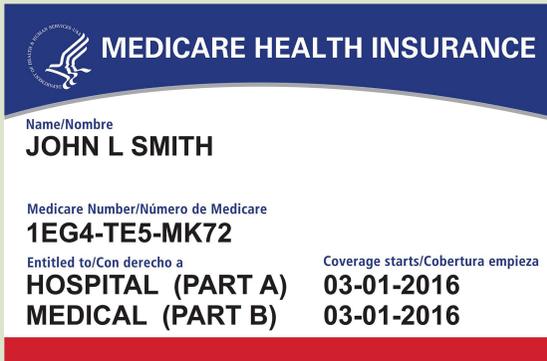
\*메디케어는 근로 크레딧 40점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세금보고를 하면 쌓입니다. 크레딧 은 1년에 4점 이상 받을 수 없으며 최소 40점을 모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회보장은퇴연금(SSA)을 65세 이전에 받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5세가 되는 생일 3개월 전에 메디케어 카드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본인의 근로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40점이면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파트 A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절차

- 시민권 증서, 출생 증명서, 영주권 카드
- 소셜 시큐리티 카드
-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
- 메디칼 수혜자는 메디칼 카드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웹사이트([www.Medicare.gov](http://www.Medicare.gov), [www.ssa.gov](http://www.ssa.gov))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통 2~3주 후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발송되며, 한달이 지나도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진행상황을 알아봐야 합니다.



메디케어 카드 견본 <출처: 메디케어 당국 (CMS)>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메디케어 공인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도 메디케어 상담과 신청을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메디-메디(Medi-Medi)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의료 비용 80%는 메디케어가, 나머지 20%는 메디칼이 지원합니다. 단, 보험료까지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은 별도로 보조프로그램(MSP)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칼 메디커넥트 (Cal-MediConnect)라는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면 HMO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원치 않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탈퇴(Opt-out)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메디칼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 크레딧이 40점이 안됩니다. 이 때문에 파트 A는 나오지 않고 파트 B만 나왔는데 A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면 보조프로그램 중 하나인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를 신청하고 파트 A 신청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MB는 극빈층에 지원되는 보조금인데, 신청할 경우 매월 파트 A와 B 보험료, 본인 부담금(디덕터블) 등을 지원해줍니다. QMB 신청을 하려면 일단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극빈층 자산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저소득층 기준은 연방빈곤선 100% 이하이며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사용하는 차 한 대를 제외한 재산이 개인은 7,160달러, 부부는 1만 75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은행 통장(체크/세이빙 계좌) 잔액,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QMB 혜택이 주어지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의 추가 도움(Extra Help)에 자동 가입돼 약값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메디케어 보험료, 공동 부담금(코인슈런스), 본인 부담금(코페이), 본인 부담금(디덕터블)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MB가 없으면 메디칼이 있어도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야하므로 미리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QMB 신청은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파트 A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B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월 보험료가 140달러가 넘어 부담스러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 중 하나인 SLMB(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를 신청하면 됩니다. SLMB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SLMB를 신청하려면 QMB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범위는 QMB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QI(Qualifying Individuals)와 QDWI(Qualified Disabled and Working Individuals)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수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저소득층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QI 의 경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5%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정 내에서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한도는 소폭 상향조정됩니다. 신청할 경우 파트 B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QDWI는 파트 A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자격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개인 4,000달러, 부부는 6,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또, QDWI는 다른 보조 프로그램과 자격요건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65 세 이하로 장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직장에 복귀하면서 무료 파트 A 를 잃게 된 경우
-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의료 보조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신청은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으로 문의하거나 가주 보건국 웹사이트 ([www.dhcs.ca.gov](http://www.dhcs.ca.gov))를 참조하면 됩니다.

**?** 메디케어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20%에 대해 궁금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C 를 가입하면 20%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HMO 플랜에 자동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치의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전문의 진료를 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 메디케어 보충보험(Supplement Plan)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통 메디갭 (Medi Gap)이라고 합니다. 메디갭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플랜인데, 가입할 경우 HMO 가 아닌 메디케어를 받는 클리닉 또는 병원 어디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갭은 10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플랜마다 커버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고르면 됩니다. 메디갭에 가입하면 코인슈런스, 코페이, 디덕터블을 포함해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의료비용의 나머지 20%까지 플랜에 따라 커버해줍니다. 단,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에 더해 메디갭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메디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A와 B가 있어야 하고 다른 직장보험이나 메디칼이 없어야 합니다. 가입시기는 65세가 된 후 6개월

동안이고, 파트 B에 가입하는 달의 첫날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메디캡은 한사람씩만 커버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혜택을 받고 싶을 경우, 두명 다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 메디케어가 끊겼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메디칼 혜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메디-메디 가입자는 메디칼을 갱신하지 않아 혜택이 중단되면 의료비 20% 지원도 중단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보험료나 메디칼이 커버한 의료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메디케어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는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나오는 사회보장연금(SSA)에서 제하기도 합니다. 메디케어 청구서는 3개월치가 한꺼번에 발급됩니다.



**Kheir Clinic**  
이웃케어클리닉  
Kheir Community Clinic  
**Clínica Kheir**

**원스탑 서비스**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복잡한 메디케어 시스템, 이웃케어클리닉이 알려드립니다.

65세가 아니더라도 이웃케어클리닉에서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격 및 신청방법 ◆혜택 ◆메디케어&메디칼 통합플랜
- ◆파트B 보험료 커버플랜 ◆QMB 등 보조프로그램 신청
- ◆분기별 HMO/PPO 플랜 변경 ◆이외 전반적인 상담

**매주 수요일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예약 필수\***

이웃케어 6가 클리닉 230호 (3727 W. 6th St. #230, LA)

**예약&문의: 문자 (213) 632-5521**

##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Medical Directives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 Form)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 장치를 이용한 연명치료를 원한다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 서류입니다. 본인이 많이 아프거나 의식이 없어서 스스로 의료적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본인을 대신해 이를 결정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의료적 지시사항을 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양식을 미리 작성해 보관해두고, 위중하거나 임종을 맞게 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진에게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 결정자는 18세 이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정보를 잘 아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의료 결정자는 법적으로 본인 주치의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 결정자는 심폐소생술(CPR)이나 산소호흡기 설치, 투석, 급식 튜브, 수혈이나 수술 등의 치료를 환자에게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작성한 의료지시서는 가족이나 친구, 주치의와 공유하고 잘 보관하면 됩니다. 사전의료지시서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지시서는 웹사이트([www.prepareforyourcare.org/welcome](http://www.prepareforyourcare.org/welcome)) 등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웃케어클리닉도 캘리포니아 공식 사전의료지시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연금(SSA) & 생활보조금(SSI)

자격이 되는 시니어는 사회보장연금(소셜연금, SSA)과 생활보조금(웰페어, SSI)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연방 사회보장국(SSA)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며 매년 납부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 의해 운영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연금(retirement benefit)·유족연금(survivors benefit)·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으로 나뉘는데 흔히 사회보장 연금 또는 소셜연금이라 부르는 것은 은퇴연금에 해당됩니다.

은퇴연금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은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는 65세 이상 시니어 및 신체 장애인에게 말 그대로 생활을 보조해주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다음은 두 프로그램을 비교한 표입니다.

	사회보장연금(SSA)	생활보조금(SSI)
설명	근로 크레딧 40점이 쌓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은퇴연금	근로 크레딧도 없고 수입도 없는 빈곤층, 저소득 층 노인이나 신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권자, 영주권자</li> <li>- 62세부터 조기 신청 가능 (단, 수령액에서 29.2% 줄어든 액수 수령)</li> <li>- 은퇴연금 신청 적정나이 67세</li> <li>- 70세까지 수령 연기 가능</li> </ul>	<p><b>생활보조금(SS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이상 시민권자</li> <li>• 65세 이상 영주권자. 단, 사회보장연금 월 수령액이 생활보조금 월 수령액보다 적어야 함</li> <li>• 65세 미만 영주권이 있는 신체 또는 시각 또는 정신 장애인. 단,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 또 SSI 신청시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함. 또 장애가 1년 이상 지속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li> </ul> <p><b>재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범위: 은행 통장잔고 또는 보유 현금이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하</li> <li>• 재산에 포함되는 않는 항목: 살고 있는 주택 1채, 사용하는 차 1대, 현 시가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묘지 자리</li> </ul>
혜택	수령액은 출생 연도와 은퇴 시기에 따라 달라짐	개인마다 다름

<b>신청 방법</b>	<p>수령시작하기 4개월전부터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세부터 받기 원하면 61세 때 사회 보장국(SSA)에 연락해 확인</li> <li>•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a href="http://www.ssa.gov/benefits/retirement">www.ssa.gov/benefits/retirement</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li> <li>• 전화(800-772-1213, 1번을 누른 뒤 한국어 요청)로도 가까운 소셜 사무실 방문. 예약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사회보장국(800-772-1213)으로 전화해 1번을 누른 후 한국어 요청하면 됨</li> <li>• 방문: 가까운 사회보장국(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찾아가 문의 및 상담한 뒤 신청 가능</li> </ul>
--------------	---	--

	<p><b>신청에 필요한 공통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li> <li>• 시민권 증서(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증명서)나 영주권 카드</li> <li>• 세금보고서,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표기된 편지, 기타 수입증명서</li> <li>• 은행 잔고 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소유 재산 증명서류</li> <li>• 집세(렌트비) 영수증, 전기, 개스, 전화 등 공공요금 청구서(유틸리티 빌)</li> <li>• 장애인인 경우 병원 정보 및 의료 기록 등</li> </ul>	
--	--	--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에서도 연금 수령 가능</li> <li>• 정년인 66 세 이후 70 세까지 수령액이 매년 8%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이도 재산으로 간주돼 수혜자격이 되지 않음. 발견되면 수령액을 모두 반환해야 함</li> <li>•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국민 연금이 있으면 이도 수입으로 간주</li> <li>•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도 소득으로 간주</li> </ul>
-----------	---	--

SSI 수령자는 캘프레쉬(CalFresh, 푸드스탬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이미 캘프레쉬를 받는 경우, SSI 수령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가족 추가 등록만 하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 실업수당이 은퇴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나요?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연금액 때문에 실업수당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 저는 미국에 와서 한번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 혼자 일한 것으로 아내도 소셜연금(SSA) 수령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근로 크레딧이 없더라도 남편이 수령하는 연금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도 정년(66세)이 돼야지만 남편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한다면 수령액은 적어집니다. 만약, 본인이 일을 했고 쌓아둔 근로 크레딧이 있다면 본인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 50% 중, 금액이 높은 쪽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연금액 계산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http://www.ssa.gov))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집에 같이 살아도 생활보조금(SSI)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와 함께 살 경우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SSI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아도 집세와 식비 등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증명하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명과 삭감 금액 상담은 거주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을 통해 하면 됩니다.

### ? 영주권자 어머니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원하십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미사회보장협정 덕분에 한국에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귀국 전에 사회보장국 (SSA)에 신고해야 하며 한국에 가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필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마이헬스 LA My Health LA (MHLA)

마이헬스LA는 LA카운티에 사는 서류미비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제외)를 위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헬스LA에 가입하면 이웃케어클리닉을 포함해 LA카운티 내 200여 개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포함해 일반 진료, 약처방, 예방접종 등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LA카운티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Services-DHS)을 통해 전문의 진료,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카운티와 연계된 병원(LAC-USC, UCLA 등)에서도 응급치료 및 수술·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헬스LA는 특별 가입기간 없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카운티 주민
- 서류미비자
- 26~49세(26세 이하, 50세 이상은 메디칼 가입 가능)
- 저소득층(소득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마이헬스LA에 적용되는 연방 빈곤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수	세금 공제 전 월소득 (Gross Income)
1	\$1,563
2	\$2,106
3	\$2,648
4	\$3,191

\*2022년 기준 <출처: 연방 보건사회복지부(HHS)>

소득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45일 이내에 받은 급여 명세서(Paystub)
-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엔, 고용주 편지
- 자영업자일 경우, 세금보고서(Schedule C 포함)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제출하는 고용주 편지에는 본인이 하루 몇시간, 일주일에 며칠, 급여는 얼마마다 한번씩 얼마를 받는지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편지를 쓴 날짜와 고용주 서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 편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본인이 무슨 일을 하루 몇시간 일했고 시급은 얼마를 받는지 상세히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 ? 서류미비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는데 소득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생활비나 렌트, 식료품 등을 자녀나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을 경우, 별도의 양식(In-Kind Form) 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 양식은 재정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도 와주고 있는지, 언제까지 지원해줄 예정인지 등을 적으면 됩니다. 소득 증명을 위해 요구하는 것일 뿐 작성 및 서명한 사람을 따로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양식은 이웃케어클리닉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자가증명 양식 MHLA AFFIDAVIT FORM



## IN-KIND INCOME AFFIDAVIT

Please complete if you are providing support to an applicant for My Health LA (MHLA) program

Patient Name: \_\_\_\_\_  
Member ID: \_\_\_\_\_

Dear \_\_\_\_\_

Your name has been given to us as a provider of in-kind income for the above-mentioned person(s)

Please complete the brief questionnaire and return it to my attention as soon as possible using the enclosed, self-addressed envelope.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Very truly yours,

\_\_\_\_\_  
California Enrollment Counselor

\_\_\_\_\_  
Date

### **Please complete: Person Providing Support:**

Last Name:		First Name:		Phone: ( )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I am providing: (Check all that apply)	Utilities <input type="checkbox"/>	Food <input type="checkbox"/>	Housing <input type="checkbox"/>	Cash Amount <input type="checkbox"/>	Please specify amount and frequency: _____
I expect to provide items (for how long?)			Please choose one: Earned <input type="checkbox"/> Free <input type="checkbox"/>		
Is applicant residing with provider?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I declare the answers give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 understand the information provided will be used to screen the applicant for eligibility to various Federal, State, and County Programs. I understand that I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fees for medical services received by the applicant.					
_____ Signature of person providing support			_____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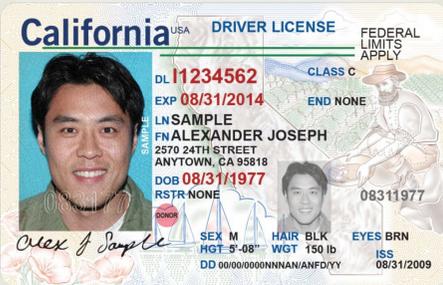
### **Applicant Receiving Support:**

I declare the answers give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information provided will be used to screen for eligibility to various Federal, State, and County Programs. I understand that if the information is found to be false, I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full amount of fees for medical services received.	
_____ Signature of Applicant	_____ Date

마이헬스LA를 신청하려면 LA 카운티 주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소, 신분증, 그리고 저소득 층이라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 증빙서류에는 다음이 해당됩니다.

- 운전면허증\*
- 여권(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유효)
- 영사관 ID
-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때는 캘리포니아 주가 서류미비자용으로 별도 발급하는 리얼 ID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얼 ID인 경우, 카드에 초록색이 2줄로 표시돼 있어야 하며 아래 사진을 참조하면 됩니다.



리얼ID



일반 운전면허증

<출처: 가주 차량등록국(DMV)>

만약 초록색 줄이 없는 일반 운전면허증일 경우,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나 노동허가서(워크퍼밋)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이헬스LA 승인 심사에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마이헬스LA를 신청할 수 없고, 현재 비자나 워크퍼밋이 만료됐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일 경우, 신분증(ID)과 소득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거나 해서 주소가 다를 경우, 60일 이내에 받은 공공요금 청구서(유틸리티 빌)를 ID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생긴 회원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종이로 돼 있습니다. 마이헬스 LA 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한다고 해서 새 카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한번 받으면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마이헬스LA 회원카드 견본 <출처: LA카운티 의료서비스국(DHS)>

## 자주 묻는 질문 Q&A

### ?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갱신할 때가 되면 만료기간과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시된 하얀색 엽서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이 엽서를 받으면 만료기간 전에 마이헬스LA를 가입한 곳으로 신분증과 주소 및 소득 증명 서류를 지참해 방문, 갱신하면 됩니다. 주소 증명으로 갱신 안내 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마이헬스 LA를 가입하면서 지정한 주치의 또는 클리닉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주치의 또는 클리닉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한 클리닉이 문을 닫았을 때
- 마이헬스 LA 가입 후 첫 30일이 지나기 전
- 가입 1년 후 갱신할 때
- 건강이나 일신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주치의 및 클리닉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이헬스LA 회원 라인(833-714-650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 ? 마이헬스 LA는 건강보험인가요 ?

아닙니다. 보험이 아닌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 ? 마이헬스 LA만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마이헬스 LA로는 기본적인 일반 진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응급 메디칼을 신청하면 응급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응급 메디칼 역시 저소득 서류미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한적인 메디칼(restricted Medi-Cal)로, 응급실 이용이나 긴급수술 등을 필요로 할 때,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메디칼은 LA카운티 사회복지국(866-613-3777)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 메디칼로 방문이 가능한 어전트케어나 응급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진료시간
에드워드 로이발 헬스센터 Edward R. Roybal Comprehensive Health Center	245 S Fetterly Ave LA CA 90022 323-362-1010	월-금 8AM-4:30PM 토 8:30AM-5PM 일 휴무
H 클라우드 허드슨 헬스센터 H. Claude Hudson Comprehensive Health Center	2829 S Grand Ave LA CA 90007 213-699-7000	월-금 7:30AM-12AM 토-일 8AM-12AM
휴버트 험프리 헬스센터 Hubert H. Humphrey Comprehensive Health Center	5850 S Main St LA CA 90003 323-897-6000	연중무휴 8AM-10PM
LA카운티 USC 메디컬센터 LAC+USC Medical Center	1100 N State St Bldg A, 2nd Fl, Rm A2B LA CA 90033 323-409-3753	월-토 8AM-6PM 일요일 휴무
LA카운티 USC 메디컬센터 LAC+USC Medical Center	1983 Marengo Street LA CA 90033 323-409-6681	연중무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통원센터 Martin Luther King Jr. Outpatient Center	1670 E 120th St LA CA 90059 424-338-1449	연중무휴 7:30AM-11PM
하버-UCLA 메디컬센터 Harbor-UCLA Medical Center	1000 W Carson St Torrance CA 90502 310-222-3528	연중무휴
올리브뷰 UCLA 메디컬센터 Olive View-UCLA Medical Center	14445 Olive View Dr Sylmar CA 91342 747-210-3000	연중무휴

<출처: LA카운티 의료서비스국(DHS)>

**?** 마이헬스LA를 가입한 후, 1년이 지나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혜택이 중단됐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첫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주소 및 소득 증명서류를 지참해 신청을 도와 주는 기관이나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 마이헬스LA 로 받을 수 없는 진료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나요?

마이헬스LA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는 치과 및 검안과 진료, 알러지 테스트,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장기이식, 임신 및 출산 준비, 불임 클리닉, 교통편 서비스, 룬텀 케어 등이 있습니다.

# 시니어 메디칼 Senior Medi-Cal

## 신청자격

- 캘리포니아 주민
- 65세 이하인 경우, 신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또는 특정질환 환자
-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단, 2022년 5월부터 적용)
-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138% 이하인 저소득층
- 메디칼이 규정한 재산 기준 충족

시니어 메디칼을 신청하려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신체 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

시니어 메디칼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 138% 이하로,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가족 수	세금 공제 전 월소득 (Gross Income)
1	\$1,563
2	\$2,106
3	\$2,648
4	\$3,191

\*위에 있는 지표는 2022년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기준 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최신 지표는 사회복지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방 보건사회복지부(HHS)>

수입 제한은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FPL)의 138% 이하지만 이보다 약간 높은 경우, 본인 분담금(Share of Cost·SOC)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입과 재산이 메디칼 신청자격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포기하기 보다는 사회복지국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65세부터는 보유재산을 심사한 후, 메디칼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메디칼에서 허용되는 재산 범위는 살고 있는 집 한 채, 타고 다니는 차 한 대 등이며 현금 및 은행 통장 잔고는 개인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하 이어야 합니다. 재산 면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동산(부동산 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주거: 살고 있는 집 한채</li> <li>• 기타 부동산: 비상업용 부동산(주택 제외), 주택 담보 대출, 신탁 증서 또는 기타 약속 어음의 순가치가 6,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를 받기 위해 재산은 순 시장가치 또는 현 액면가에서 연간 6%의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li> <li>• 사업 또는 매매에 사용된 부동산: 매매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된 부동산은 그 재산의 순가치나 소득 창출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한대</li> <li>• 매매 또는 사업에 사용된 동산</li> <li>• 개인 소유물: 의복, 가보, 결혼 및 약혼 반지, 기타 100달러 미만의 순가치를 지닌 보석 가정용품</li> <li>• 퇴직연금(IRA) 등 일과 관련된 연금 플랜: • 플랜에 등록된 사람이 메디칼을 원치 않으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름이 등록된 사람이 메디칼을 원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고 있으면, 그 잔액은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돼 계산되지 않습니다.</li> <li>• 생명 보험 증서: 1인당 1,500달러 이하의 액면가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생명 보험증서</li> <li>• 취소할 수 없는 장례 신탁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장례 계약금 선불</li> <li>• 취소할 수 있는 장례 기금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장례 계약금 선불: 1인당 1,500달러 까지의 가치에 발생된 이자를 더하게 됩니다.</li> <li>• 묘지 아이템: 미리 사둔 못자리나 관, 비석 등 기타: 악기, 컴퓨터, 소장품 등</li> </ul>

<출처: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주의할 점은, 메디칼 신청자가 지난 30개월 동안 정당한 대가 없이 증여하거나 양도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메디칼 당국이 살펴보는데 이는 메디칼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재산 규모를 고의로 줄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과 재산으로 간주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 (세금공제 전 받는 금액, Gross Income)

- 급여 (팁 포함)
- 사회보장 은퇴연금(소셜연금) 및 장애연금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보조금
-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 임대 소득
- 실업 수당(EDD)
- 복권 당첨금, 도박 상금
- 용자금, 장학금
- 현금 또는 선물(자녀에게 받은 용돈 포함)

##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

- 살고 있는 집 한 채 외 주택, 기타 부동산 및 토지
-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 외 차량, 비즈니스용 차량
- 은행 통장 잔금(체킹계좌, 저축계좌)
- 은퇴자금
- 생명 보험(1인 1500달러 상당 이하는 예외), 롱텀케어 보험, 장례보험
- 주식, 배당금, 석유 채권
- 모기지
- 보석 및 귀중품(가보, 결혼 예물 제외)

## 재산 환수 프로그램

메디칼 혜택을 받으면 본인 사망 후 정부가 가입자가 남긴 재산을 무조건 회수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도 많은 시니어가 메디칼 신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해당 프로그램(Estate Recovery Program) 규정이 바뀌어 재산 환수 대상과 범위가 대폭 줄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메디칼 수혜자의 모든 재산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환수 조치는 55세 이상 수혜자가 사망하고 남긴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없다면 정부는 재산을 환수하지 못합니다. 사망자가 남긴 배우자가 있거나 21세 이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재산 환수가 면제됩니다. 재산 환수 대상에서 개인 은퇴연금 계좌, 수혜자가 정해진 생명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환한 경우(리빙 트러스트, 조인트 테넌시 등), 재산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환수가 적용되는 범위도 55세 이후 메디칼로 처방약 비용과 장기요양 시설(너싱홈, 롱텀케어) 이용비용을 충당한 경우로 좁아졌습니다. 따라서 평소 일반 또는 전문 진료를 받았거나 양로보건센터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메디칼로 커버한데 대해 환수할 수 없습니다.

## 혜택

시니어 메디칼의 가장 큰 혜택은 레귤러 메디칼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나 코페이(본인 부담금)를 내지 않거나 낮은 비용만 내도 된다는 점입니다. 진료를 받아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혜택에는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시니어 메디칼에는 간병인서비스, 양로보건센터, 너싱홈,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5세 이전부터 이미 메디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시니어 메디칼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메디칼 소지자는 65세가 되는 해에 재산 내용을 묻는 갱신서류를 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면 기존 메디칼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20 페이지 참조

**?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70세 부모님이 최근 캘리포니아로 오셨습니다.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혜택을 받는다면 자녀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있나요?**

메디칼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 소지자 또는 신청자이면(신청서 접수 후 받은 확인서로 체류신분 증명서류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캘리포니아에만 해당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야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는 주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통과하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 재정적인 부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시니어 서비스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목록

시니어 서비스, 복지 혜택 등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을 돕는 한인단체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체이름	주요업무	전화번호
이웃케어클리닉 Kheir Clinic	의료서비스(클리닉), 시니어케어(양로보건센터) 제공  LA 카운티 거주 한인 대상 메디칼, 메디케어, 마이헬스 LA 등 의료 프로그램 신청	213-235-2800 213-637-1080
LA 한인회 KAFLA	각종 민원, 캘프레쉬(푸드스탬프), 노인아파트, 실업수당(EDD) 신청	323-732-0912
한인청소년회관 KYCC	유틸리티 빌 문제 해결 및 할인 신청, 유권자 등록, 입주자 권익, 세금보고 신청	213-365-7400
민족학교 KRC	노인아파트, 캘프레쉬, 시민권 신청	323-937-3718
한미연합회 KAC	유권자 등록, 입주자 권익 등	213-365-5999
한인가정상담소 KFAM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상담 등	213-389-6755
아시아나메리칸 정의 진흥연대 AAAJ	법률 상담, 시민권 신청	800-867-3640
캘라이프 CALIF	노인아파트, 캘프레쉬, SSA 신청, 휠체어 대여	213-627-0477

메디칼, 자택간병서비스(IHSS) 등 의료 및 복지 혜택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한 LA카운티와 각 정부 기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웹 사이트 주소
메디칼 Medi-Cal	877-597-4777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www.dpss.lacounty.gov
이민자 현금 지원 CAPI	866-613-3777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www.dpss.lacounty.gov/en/cash/capi
자택간병서비스 IHSS	888-944-4477 213-744-4477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www.dpss.lacounty.gov/en/senior-and-disabled/ihss.html LA 시 노인국(DOA) www.aging.lacity.org/caregiver-resources
저소득 아파트 Affordable Low-Income Housing	800-731-4663 626-262-4511  877-428-8844	LA 카운티 주택개발국 (LAC Development Authority) www.lacda.org  LA 카운티 주택국 (LAC Housing Resource Center) www.housing.lacounty.gov
생활보조금 SSI	800-772-1213	연방 사회보장국(SSA) www.socialsecurity.gov/ssi

공문서나 신분서류 등을 발급하는 기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	기관 이름	전화번호 / 웹사이트
출생, 사망, 결혼 증명서	LA카운티 등록국 LA County Clerk, Registrar Recorder	800-201-8999 www.lavote.net
운전면허증, 신분증	가주 차량등록국(DMV) C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800-777-0133 www.dmv.ca.gov
영주권 및 이민신분, 거주 증빙서류	연방 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800-375-5283 www.uscis.gov
소셜시큐리티카드	연방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800-772-1213 www.ssa.gov
세금보고	연방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800-829-1040 www.irs.gov

## 식사 서비스 Senior Meal Services

혼자 살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노인들은 식사를 챙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푸드뱅크나 무료 식사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푸드뱅크 위치를 찾고 싶다면 LA리저널 푸드뱅크 웹사이트([www.lafoodbank.org](http://www.lafoodbank.org))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무료 식사 및 식료품, 또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체 이름	내용	전화번호	주소 / 운영 시간
카쉬센터 Karsh Center	음식 제공	213-401-4651	3750 W. 6th St. LA, CA 90020 화 오후 12 시~2 시 일 오전 7:30~9:30분
세인트 프랜시스 센터 St. Francis Center	음식 제공	213-747-5347	213-747-5347 <a href="http://www.stfranciscenterla.org">www.stfranciscenterla.org</a> 에서 사전 등록해야함 수목금토 오전 10~11:30분
LA 코리안 LA Korean Corps	음식 제공	213-480-0714 x4	933 S. Hoover St., LA, CA 90006 월수금 오전 9시~오후 4시
이스트LA East LA Corps	음식 제공	323-263-7577	140 N. Eastman Ave. LA, CA 90063 월수금 오전 9시~오후 4시
쇼핑 헬퍼스LA Shopping Helpers LA	식료품 쇼핑 무료 지원서비스	323-628-7071	shoppinghelpersla@ gmail.com 이메일을 보내 예약해야함
숍 포 시니어 Shop 4 Seniors	장보기, 식료품 배달 무료 서비스		Maryjerejian2@gmail.com 이메일을 보내 예약해야함
카운티 무료 식료품 배달서비스 County Free Grocery Delivery Service	미리 계산한 식료품 픽업해 집으로 무료 배달	888-863-7411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어반 파트너스LA Urban Partners LA	음식 픽업, 집으로 무료 배달	213-401-1191	urbanpartnersla@ gmail.com 이메일을 보내 예약해야함
프로젝트 엔젤 푸드 Project Angel Food	1주일에 1번 음식 무료 배달	323-845-1800	info@angelfood.org 이메일을 보내 가입해야함

# 식품 보조 캘프레쉬 CalFresh

푸드스탬프(Food Stamp)로 잘 알려진 캘프레쉬(CalFresh)는 저소득 가정에게 제공되는 식품 구매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영양보조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의 캘리포니아 버전입니다. 캘프레쉬에 가입하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가 제공되며 카드는 마켓, 식료품점 등에서 체크카드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캘프레쉬 자격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자격 및 혜택	해당여부
나이	상관없음	
이민신분	영주권자, 시민권자, T(중범죄 피해자) 혹은 U 비자(인신매매 피해자) 소지자	O
	추방유예수혜자(DACA), 서류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X
소득	연방빈곤선 130% 이하 *(아래 표 참조)	
재산	- 가족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3,500달러 이하 - 없을 경우에는 2,250달러 이하	
캘프레쉬로 구입 가능한 품목	쌀, 빵, 시리얼, 고기 등 식료품. 음식용으로 재배할 씨앗	
구입 불가능한 품목	뜨거운 음식(Hot foods, 이미 조리돼 보온코너에서 판매되는 음식), 영양제, 처방약, 비누, 술, 담배, 애완동물 먹이,	
기타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의 경우 22살까지만 구성원으로 인정. 본인이 혜택을 못 받아도 다른 가족 구성원은 받을 수 있음	

## 이민신분

캘프레쉬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를 위한 T나 U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추방유예수혜자(DACA)와 서류미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가족 중 서류미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거주자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뺀 나머지 3명이 합법 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3명이 캘프레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캘프레쉬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인 만큼, 신청자의 소득이 저소득층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가족 소득을 계산할 때는 서류미비자 구성원의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연방빈곤선 130% 이하인데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수	세금 공제 전 월소득 (Gross Income)
1	\$1,396
2	\$1,888
3	\$2,379
4	\$2,871

\*표는 2022년 기준입니다. 최근 연방빈곤선 지표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회복지국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표에 나와있듯이 가족 수에 따라 월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소득은 세금 공제 전(Gross Income)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월소득이 1,396달러 이하면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캘프레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에서 제할 수 있는 지출 경비 목록이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체 소득에서 이들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 소득이 캘프레쉬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목록입니다.

- 근로 소득의 20%
- 1~3인 가족 = 164달러, 4인 가족 = 174달러, 5인 가족 = 204달러
- 렌트비나 유틸리티비로 나가는 지출, 최대 552달러
- 자녀 양육비
- 노인이나 장애자의 경우 월 35달러를 초과한 의료비 등

## 재산

캘프레쉬 신청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도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재산 한도는 살고 있는 집 한 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한 가구의 총 재산이 2,25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총 재산 한도는 3,500달러까지입니다.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현금, 은행 통장(체킹 및 세이빙 계좌) 잔금, 주식, 신탁금, 모기지 등이 있습니다.

## 수혜 내용

캘프레쉬를 신청하고 승인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혜 금액은 소득, 가족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혜금액은 예전에는 쿠폰(voucher) 형태로 제공됐지만 현재는 수혜금액이 적립된 데빗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수혜자는 이 카드로 원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수혜금액은 매달 자동으로 카드에 입금됩니다.



EBT 카드 견본 <출처: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877-328-9677 로 전화해 신고하면 됩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본인 카드는 일시 정지되고 새로운 카드가 발급됩니다.

## 신청절차

필요한 서류 목록은 영주권 카드 또는 시민권 증서, 신분증(ID), 소셜 시큐리티 카드, 유틸리티 청구서, 소득 증명서류(급여 명세서, 세금보고서), 65 세 이상인 경우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은행 계좌 내역서) 등입니다. 신청은 전화, 우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LA 카운티에 사는 경우, 사회복지국(877-847-3663, 한국어 라인 6 번)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됩니다.

우편: 사회복지국에 연락(877-847-3663, 한국어 라인 6 번)해 캘프레쉬 신청서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사회복지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보낼 곳 주소는 신청서에 나와있습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캘프레시 전용 사이트 ([www.getcalfresh.org](http://www.getcalfresh.org))나

카운티 사회복지국 웹사이트([www.yourbenefits.laclrs.org/ybn](http://www.yourbenefits.laclrs.org/ybn),

[www.benefitscal.com](http://www.benefitscal.com))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캘프레쉬 신청서 작성 도와주는 곳

- LA 한인회: 9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323-732-0192
- 민족학교: 900 Crenshaw Blvd. Unit B, Los Angeles, CA 90019 / 323-937-3718
- 리틀도쿄서비스센터 : 231 E. 3rd St. #G101, Los Angeles, CA / 213-473-3035
- 캘라이프: 634 S. Spring St., Los Angeles, CA / 213-627-0477

## 캘프레쉬 신청 후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소셜워커와 전화 인터뷰 일정이 정해집니다. 인터뷰는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소셜워커가 신청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인터뷰 날짜와 시간은 우편으로 통보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인터뷰에 응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한인일 경우, 한국인 담당자가 전화하거나 한국인 통역사와 3자 통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프레쉬 승인 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줄 수 있는데 긴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월 소득이 150달러 미만이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잔액이 100달러 미만일 때
- 가구 소득이 렌트나 유틸리티로 나가는 비용보다 적을 때
- 은행 계좌 잔액이 100달러 미만인 계절 노동자(수확철 농부)로서 소득이 끊겼을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생활보조금(SSI)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도 캘프레쉬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캘프레쉬를 받는다고 해서 SSI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이미 캘프레쉬를 받는 경우, SSI 수령자가 별도로 신규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가족 추가 등록만 하면 됩니다. 레스토랑 밀스(Restaurant Meals) 프로그램을 통해 EBT 카드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노숙자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당에는 도미노피자, 버거킹, 서브웨이, 칼스주니어 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로고 표시가 식당에 붙어있다면 EBT 카드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 **캘프레쉬는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요?**  
 수혜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을 계속 해야합니다.

갱신 서류 (SAR 7, 양식 참조)는 6개월에서 1년 마다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캘프레스 갱신 서류 SAR 7 FORM

STATE OF CALIFORNIA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 SAR 7 수혜자격 현황 보고서

보고 달 \_\_\_\_\_ 일

혜택을 제 때 받으려면 이 양식을 \_\_\_\_\_ 월 1일 이후에 서명한 후 \_\_\_\_\_ 제출하는 날 \_\_\_\_\_ 월 5일 전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례 번호 \_\_\_\_\_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ounty Specific instructions w/county url)

직원 이름: \_\_\_\_\_ (DIST. ID HERE)

직원 전화번호: \_\_\_\_\_

카운티: \_\_\_\_\_

도로 주소: \_\_\_\_\_

시, 주, 우편번호 \_\_\_\_\_

비고: \_\_\_\_\_

다음 중 중단하기를 원하는 혜택이 있으면 해당 네모 칸에 체크하십시오.  내 CalWORKs 중단  내 CalFresh 중단  
 내 Medi-Cal 중단

1. 지난번 보고 이래 귀하의 자택에 이사를 들어 왔거나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출생한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포함할 것) 또는 귀하가 다른 사람의 집에 이사를 갔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할 것)

이사진 날짜 (월/일/년)	성명 (이름, 중간이름, 성)	생년월일	귀하와의 관계	식품을 정기적으로 함께 구매하고 요리합니까?
<input type="checkbox"/> 들어 왔음 <input type="checkbox"/> 나갔음 //		/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들어 왔음 <input type="checkbox"/> 나갔음 //		/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들어 왔음 <input type="checkbox"/> 나갔음 //		/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지난번 보고 이래 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할 것)

새 주소: \_\_\_\_\_ 이사한 날짜: \_\_\_\_\_

우편 주소(상기 주소와 다를 경우) \_\_\_\_\_

3. 지난 번 보고 이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아래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현재 월 임대 또는 월 모기지(주택용자금)? \$ _____	재산세와 주택보험료를 모기지외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월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 _____
--------------------------------------	---

임대 또는 모기지 지불금에 포함되지 않은 유틸리티 비용은? 있을 경우 해당 유틸리티 비용:

전화비  쓰레기 수거비  수도세  전기세/가스비  기타 난방비 또는 냉방비

4. CalWORKs의 경우: 귀하의 자택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 A. 미집행 영장에 응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
  - B. 법원에서 말한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사람
-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비용자/위반자의 이름	상기의 A 또는 B	영장을 발부한 또는 위반한 주는 어느 주입니까?	영장 발부일 또는 위반 날짜

5. 의료 비용: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CalFresh 수혜자로서 증가된 의료 비용이 있으면 아래 항목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십시오.

변경한 사람/처지? \$ _____	증가한 금액: \$ _____
------------------------	---------------------

6. 아동양육비: CalFresh 수혜자로서 지난번 보고 이래 변경된 아동양육비(지불의무가 있는)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십시오.)

해당 보고 달에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 \_\_\_\_\_

누가 아동양육비를 지불했습니까? \_\_\_\_\_

7. 가족 부양: CalFresh 수혜자로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는 가족 중에 지난번 보고 이래 가족 부양비가 증가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십시오.

해당 보고 달에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 \_\_\_\_\_

지불한 사람: \_\_\_\_\_ 부양 가족 기재: \_\_\_\_\_

8.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지난번 보고 이래 재산, 토지, 주택, 차량, 은행 계좌, 돈, 지불금(예: 복권/카지노에서 딴 돈, 사회보장국에서 받은 이전의 혜택) 또는 기타 자산 항목을 수령, 구매, 판매, 거래 또는 무료로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여백이 더 필요하면 다른 용지에 기입해 첨부하십시오.)

해당인	자산 유형	연세	금액/가치	<input type="checkbox"/> 구매했음 <input type="checkbox"/> 팔았음 <input type="checkbox"/> 무료로 주었음 <input type="checkbox"/> 다 써버렸음
				<input type="checkbox"/> 선물로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교환했음 <input type="checkbox"/> 썼음/당첨되었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SAR 7 (Korean) (12/14) ELIGIBILITY STATUS REPORT - FOR CASH AID AND CALFRESH - REQUIRED FORM - SUBSTITUTES PERMITTED

PAGE 1 OF 2

## ? 캠프레쉬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청하면 승인 여부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가 편지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소득 조건을 넘는 경우 캠프레쉬가 거절됩니다. 승인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본인 케이스 워커나 신청서가 접수된 사회복지국 사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 ?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인은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더라도 시민권 자녀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가족 구성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사려고 합니다. EBT 카드로 결제 가능한가요?

EBT를 받는 업체에 한해 가능합니다. 지정된 곳은 아마존, 알디(ALDI), 월마트, 인스타 카드 등이 있습니다. 식료품 구매 후, 매장에서 픽업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없지만 집으로 배달을 요청할 경우에는 배달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달료는 EBT 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EBT 카드 받는 마켓	온라인	매장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 아름다운 마무리 End of Life Planning

한인사회도 인구 노령화로 은퇴 후 삶과 비용에 대한 고민, 이에 따른 가족들의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이 2021년 한인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27%는 장례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유언장, 장례, 묘지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죽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준비와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했습니다.

### 본인과 가족을 위해 죽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죽음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다가오면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이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죽음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재산 관련 서류

-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목록, 계좌번호, 잔금 등 정리
- 은퇴연금 서류: 가입 연금 종류, 번호 등
- 세금보고서, 차량등록증
- 주식: 거래 증권회사 및 증권 번호, 소유 주식 종류 및 주식 수
- 부동산 명의(property title or deed)

### 건강 관련 서류

- 사전의료지시서
- 본인 의료 기록
- 보험카드: 메디칼, 메디케어, 민간보험 등
- 롱텀케어 보험 약관

### 기타

-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각종 웹사이트 가입정보: 사용자 이름(ID)과 암호(패스워드) 등 정리
- 출생증명서
- 운전면허증,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여권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안전한 약 복용 Medication Safety

나이가 들면서 복용하는 약 종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약 이름도 다르고 쉽게 외우기 힘든 만큼, 복용하는 약에 대한 이해와 파악도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현재 복용하는 약 이름, 복용 횟수 및 용량을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기
- 약을 처방받은 약국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미리 적어두기
-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아닌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는 약 이름과 목록이나 처방전 지참하기
- 약물 부작용에 대해 파악하기
- 2가지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할 때 약 성분들이 충돌해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는지 확인
- 하기집에 있는 오래된 연고 쓰지 말기(감염 우려 때문에 개봉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사람의 약을 나눠먹지 말기(개인의 질환에 따라 처방받지 않은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약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기(냉장고는 습도가 높는데 약이 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생기고 성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단, 안약이나 인슐린 주사는 냉장보관이 가능합니다)

약 안전에 관한 안내는 아래 웹사이트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연락처 / 웹사이트 주소
연방 식품의약국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센터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전화: 888-723-3366 웹사이트: <a href="http://www.fda.gov">www.fda.gov</a>
노인 케어서비스 Eldercare Locator	전화: 800-677-1116 이메일: <a href="mailto:eldercarelocator@n4a.org">eldercarelocator@n4a.org</a> 웹사이트: <a href="http://www.eldercare.acl.gov">www.eldercare.acl.gov</a>
국립 보완통합 건강센터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	전화: 888-644-6226 전화: 866-464-3615 이메일: <a href="mailto:info@nccih.nih.gov">info@nccih.nih.gov</a> 웹사이트: <a href="http://www.nccih.nih.gov">www.nccih.nih.gov</a>

# 양로보건센터 Adult Day Health Care (ADHC)



정식 명칭은 커뮤니티 기반 성인 서비스(Community-Based Adult Services·CBAS)입니다. 이름이 바뀐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명칭인 양로보건센터(ADHC)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성인을 위한 낮시간 건강관리 센터(Adult Day Health Care Center)이며 흔히 약자인 ADHC로 불립니다. 양로보건센터는 노인들이 낮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며,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고, 기본 4시간 이상 센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센터에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체중, 체온, 혈압, 당뇨 등 건강상태와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 간호 서비스와 작업/물리/언어 치료를 개인 맞춤 관리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작업치료는 손을 이용한 상체운동에 집중합니다. 또, 식사나 목욕, 머리를 빗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물리치료는 하체를 이용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찜질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고 언어치료는 기초적인 음성언어 재활 훈련을 돕습니다.

이에 더해 돌봄 서비스, 건강 교육, 심리 상담, 치매 예방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소셜 워커)는 복지 혜택에 대해 상담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해주시도 합니다. 그룹활동과 취미교실이 운영돼 노인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로보건센터에는 따로 영양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단으로 구성된 아침,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또, 집에서 센터까지 교통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간호 서비스	혈압, 당뇨 등 매일 확인, 약 관리 등
복지 서비스	심리 상담, 복지혜택 상담, 지역사회 서비스 연결 등
활동 치료	신체 - 스트레칭, 그룹체조, 춤 배우기 등 사회성 - 게임, 아침뉴스 인지 - 소그룹활동, 치매교실, 노래방 등
작업 치료	손을 이용한 상체운동
물리 치료	하체운동, 스트레칭, 찜질
언어 치료	음성언어 재활훈련

양로보건센터는 대부분 메디칼을 이용해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메디칼이 없는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롱텀케어 보험을 통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단, 주치의의 추천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양로시설 Assisted Living Facility

1인 1실이나 2인 1실로 구성된 양로시설(양로호텔)에서는 기본적인 옷 입기, 목욕, 용변, 약 관리 등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요양시설(양로병원 또는 너싱홈)과 같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진 않습니다. 시설마다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식사나 약을 방으로 가져다 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양로시설에 들어가고 싶은 환자는 보통 입원한 병원에서 연결해줍니다. 때로는 본인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메디케어-메디칼이 있거나 장기보험(롱텀케어 보험)이 있으면 양로시설 비용이 커버되지만, 메디케어만 있으면 거주 기간과 비용이 100% 보장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은 환자의 상태와 시설에 따라 월 1,800~1만 2,000 달러(2022년 기준)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LA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한식을 제공하는 양로시설(양로호텔) 정보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2021년 기준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시설은 이웃케어클리닉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름	주소	한인 직원
가든 실버타운 Garden Silver Town	2830 Francis Ave. LA, CA 90005 전화: 213-384-7305	간호사, 직원
무궁화 실버타운 Mugunghwa Silver Town	1423 S. Manhattan Pl. LA, CA 90019 전화: 323-373-1980	간호사, 직원
서니힐스 양로호텔 Sunny Hills Assisted Living	8717 W. Olympic Blvd. LA, CA 90035 전화: 310-659-4301 310-770-0538 310-659-4308	간호사, 직원
엘림 실버타운 Elim Silvertown	1126 S. Westmoreland Ave. LA, CA 90006 전화: 213-736-7777	간호사, 직원

## 여성암 검진 프로그램 Every Woman Counts (EWC)

암 검진 프로그램(Cancer Detection Program·CDP)의 하나인 '모든 여성은 소중합니다 (Every Woman Counts·EWC)'에 가입하면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조기 발견해 조기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WC 가입을 위해서는

- 캘리포니아 주민
- 40세 이상: 유방암 검사
- 40세 이하일 경우 유방 부위에 혹이 만져지거나 분비물이 나오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 21세 이상: 자궁경부암 검사
- 메디칼이나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인 저소득층 (아래 표 참조)

가족 수	세금 공제 전 월소득
1	\$2,265
2	\$3,052
3	\$3,838
4	\$4,625

<출처: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이웃케어클리닉은 마이헬스 LA와 암 검진 프로그램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이웃케어클리닉에서 무료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메디칼 Emergency Medi-Cal

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응급 메디칼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급 메디칼은 일반(레귤러) 메디칼과 달리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911 에 연락해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서 받는 검사 비용 등 대부분이 무료로 커버됩니다. 응급 메디칼로는 일반 진료, 치과, 검안과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민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이민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CAPI)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관하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민신분 때문에 사회보장 은퇴연금이나 연방 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영주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민
- 65 세 이상 시니어, 신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 월소득이 CAPI 수혜금보다 적은 경우
- 재산이 개인은 2,000 달러, 부부는 3,000 미만이어야 함
- 연방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했지만 거절된 경우. 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중범죄 기록이 있거나 국가 공무원, 타주 거주민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

#### ? CAPI를 신청하면 수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수혜금은 소득, 가족 수 등 개인마다 다릅니다. 또 수혜금은 본인 월소득을 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신청하면 계속 쓸 수 있나요?

CAPI 신청은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통해 가능합니다.

LA카운티는 866-613-3777 (한국어 9번)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CAPI는 한번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씩 갱신 서류를 제출해야 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만약 이민신분이나 소득, 혼인 여부 등이 바뀌었다면 바로 사회복지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 SSI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CAPI를 신청할 수 있나요?

CAPI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SSI를 수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 CAP를 받을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CAP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시 생계를 전적으로 정부의 현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주권자로서 CAP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임신 메디칼 Pregnancy Medi-Cal

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임신부라면 임신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메디칼로 임신 시, 정기검진부터 출산까지 진료를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60일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자격요건은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30주 이전의 임신부입니다. 또, 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는 넘지만 322% 이하라면 임신 메디칼의 하나인 MCAP(-Medi-Cal Access Program)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메디칼과는 달리,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MCAP은 AIM(Aids for Infants and Mothers)으로 잘 알려진 프로그램의 새 이름입니다.

## 자택간병서비스 In Home Supportive Service (IHSS)

자택간병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니어 및 환자들을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이 집에서 생활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이 집으로 와 식사 준비에서부터 청소, 빨래, 옷 입혀주기, 대소변 도움, 식료품 구입,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인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가구 이동, 공공요금(유틸리티 빌) 보내기, 애완동물 관리, 정원 손질, 수혜자를 사고 모임에 데리고 가는 것 등입니다. IHSS 프로그램은 가주에서만 50만 명 이상이 서비스 제공자, 즉 간병인(care provider 또는 caregiver)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서비스에 필요한 사람의 수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 및 환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신경통이나 관절염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치매 중기나 말기 환자들은 단순히 간병서비스로 치료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 자택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 메디칼 수혜자
- 캘리포니아 주민
- 65세 이상
- 65세 이하일 경우 신체적 장애나 심각한 질병(신장투석, 암, 루게릭 등)이 있는 저소득층
- 양로시설이 아닌 본인의 집에 거주해야 함

간병서비스는 메디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디칼 수혜자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b>메디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Accepts Medi-Cal</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택간병서비스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li> <li>• 양로보건센터 ADHC (Adult Day Health Care) or Community Based Adult Services (CBAS)</li> <li>• 양로시설(양로호텔) Assisted Living Facilities</li> <li>• 장기 요양원 Nursing Homes</li> <li>• 단기요양시설(양로병원) Skilled Nursing Facilities</li> <li>• 호스피스 Hospice Care</li> </ul>
<p><b>메디칼을 받지않는 서비스 Private Insurance or Private Pa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 전문 요양시설 Memory Care Units</li> <li>• 간병제공은퇴커뮤니티</li> <li>•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li> </ul>

## 자택간병서비스 신청하기

LA카운티 사회복지국 자택간병서비스(IHSS) 사무실로 전화(888-944-4477) 한국어 서비스 6번 또는 888-822-9622 한국어 서비스 7번)해 연결된 소셜워커에게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등록 시 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후에는 신청인 집으 로 IHSS 프로그램 의료 증명서가 발송됩니다. 의료 증명서는

신청인이 왜 간병인이 필요한지, 일상활동은 얼마나 하기 힘든지 등에 대해 묻고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가 작성을 마친 의료 증명서는 IHSS 담당 소셜워커에게 다시 보내면 됩니다. 이후, IHSS 사무실에서 신청인을 담당하는 소셜워커가 수주 내로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보게 되는데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몇가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방문 후, 신청자에게 필요한 간병인 서비스의 기간과 시간, 즉 한달에 간병인도 도와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 장기 요양원 Long-Term Care Facilities

환자 상태가 중기나 말기로 넘어가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메디칼로 커버됩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메디칼이 있는 사람은 비용이 모두 커버되지만, 너싱홈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길고 최소 2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 가족은 되도록이면 빨리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입소를 원하는 너싱홈에 대기자 명단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례 계획 Funeral and Burial Arrangements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례 절차나 매장 방식을 미리 지정하는 것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매장을 해야 할지, 화장을 해야 할지 같은 고민과 경제적인 부담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미리 장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장례식 하루 전, 모든 장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아, 남겨진 가족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장례 계획과 묘지 형태를 미리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본인과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망 상황에 따른 절차 안내

- 집에서 사망할 경우: 911에 연락하고 경찰이 먼저 시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자연사, 병사)이 확인되면 가족이 장의사로 연락해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만일 사망원인이 사고사이거나 타살로 의심될 경우, 검시소(Coroner's Office)로 시신이 옮겨지고 부검이 완료되는 대로 장의사로 이동됩니다.

- 병원이나 양로 및 요양시설에서 사망할 경우: 환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연락이 갑니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입원할 때 미리 지정한 장의사로 연락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사망진단서와 시신 매장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장례가 가능한데, 보통 장의사에서 이런 행정 서비스를 대행합니다.
- 타주나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 타주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시신을 장지가 있는 곳까지 운구할 수 있지만 장의사와 먼저 협의해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화장할 것이 권고되며, 장의사와의 협의 하에 시신을 방부 처리해 운송이 가능합니다.

## 장례 방법

장례 방법은 크게 매장과 화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장의 경우 시신이 들어간 속관과 속관을 둘러싼 겉관을 정하게 됩니다. 관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비석이나 하관, 방부 처리 등에 드는 비용도 장지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의 경우, 시신을 화장터까지 운구하는 관을 빌려야 하는데 이 비용도 장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장의사는 화장을 한 유골을 유가족에게 넘겨만 줄 수도 있고, 매장 장례와 같이 시신과 함께 장례를 먼저 치르고 화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장례 비용과 보험

전미장례디렉터협회(NFD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평균 장례 비용은 9,420달러에 달합니다. 장례 비용 문제에 대해 미리 가족과 협의하거나 준비하는 것도 웰다잉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 절차에서 비용은 장지(Cemetery)와 장의사(Funeral Home)에서 발생합니다. 장례 방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비용은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3년,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장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반 보험처럼 살아있는 동안 매월 일정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가족에게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 장례 절차를 위해 장의사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 보험은 90세 미만이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보험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소득-노인 아파트

## Affordable Low- Income Housing

캘리포니아 집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렌트비가 부담되는 시니어가 많아질수록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아파트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대기 기간만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이 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아파트는 대부분 62세 이상, 일부는 55세가 되면 입주 가능. 장애인인 경우 52세만 되도 일부 아파트에 한해 입주 가능
- 렌트비는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
- 신청자의 월소득에는 생활보조금(SSI)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도 포함
- 본인 명의로 재산이 많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통장 잔고의 경우 개인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까지만 허용
- 소득 기준은 아파트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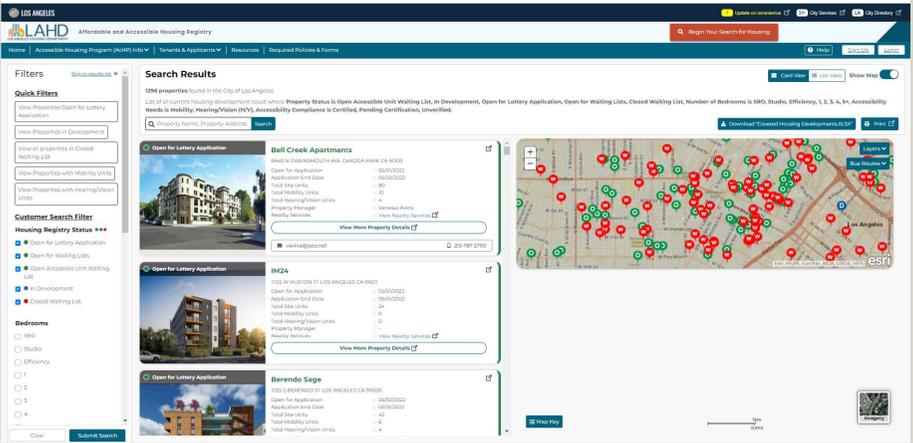
자격이 되면 입주가 가능하거나 대기자 명단이 열려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신청서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 이민신분 관련 서류, 세금보고서 등 소득 증명 서류, 은행 기록 같은 재산 증명 서류 등입니다. 신청서는 가정당 1장씩만 제출이 가능하고 양식은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소득 아파트 찾기

저소득층 아파트를 신청하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시니어가 많습니다. 저소득 아파트에 관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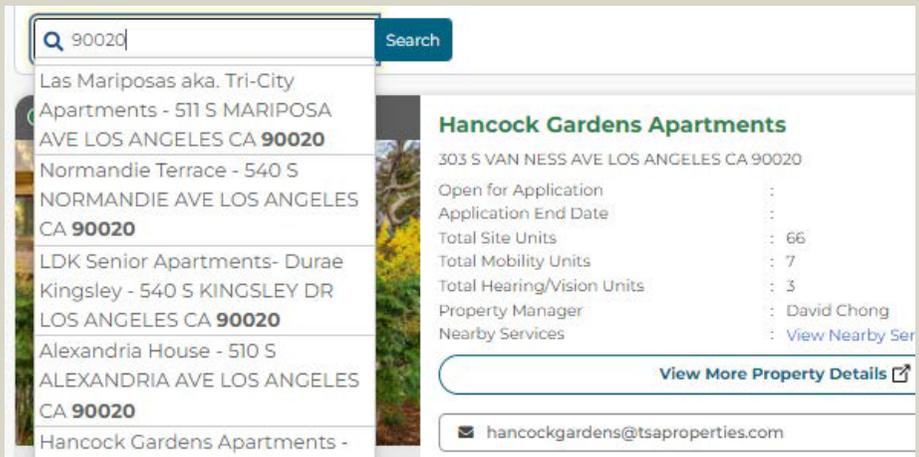
### LA시 주택국

LA시 주택국 웹사이트([www.lahousing.lacity.org/AAHR](http://www.lahousing.lacity.org/AAHR))에서는 zip코드(zip code)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및 가까이에 있는 저소득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있는 곳도 따로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출처: LA시 주택국(LAHD) 웹사이트>

위의 지도와 같이 아파트 대기자 명단(웨이팅 리스트)이 열려있는 곳, 닫힌 곳, 현재 공사 중인 곳 등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실 정보와 유닛 정보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빨간색은 대기자 명단이 닫힌 곳, 초록색은 대기자 명단이 열려 있는 곳, 파란색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최근 완공한 곳을 뜻합니다. 아래와 같이 웹사이트에서 특정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인근 저소득 아파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LA시 주택국 웹사이트에 이메일과 이름, 전화번호를 넣고 개인 어카운트를 만들면 대기자 명단이 열린 아파트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LA 한인타운 저소득 아파트 목록

다음은 LA한인타운 구역에 위치한 저소득 아파트 목록입니다. 목록에 포함된 아파트는 모두 한인타운으로 명명된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로 범위 기준은 3가부터 올림픽, 버몬트부터 웨스턴까지입니다. 이외 다른지역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LA시 주택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ancock Gardens Apartments

303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20

Total Site Units: 66

Total Mobility Units: 7

Total Hearing / Vision Units: 3

Property Manager: David Chong

이메일: hancockgardens@tsapropties.com

전화: 323-938-6646



### LDK Senior Apartments Durae Kingsley

540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20

Total Site Units: 35

Total Mobility Units: 2

Property Manager: Teresa Henriquez

이메일: LDK@levinegroups.com



### Normandie Terrace

540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20

Total Site Units: 66

Total Mobility Units: 4

Total Hearing / Vision Units: 2

Property Manager: Maria Guerrero

이메일: maria.guerrero@rhf.org

전화: 213-387-1063

## LA 한인타운 저소득 아파트 목록



### **Alexandria House**

510 S ALEXANDRIA AVE.  
LOS ANGELES, CA 90020

Total Site Units: 16

Total Mobility Units: 1

Total Hearing / Vision Units: 1

Property Manager: Marybel Flores

이메일: alexandriahouse@barkermgt.com

전화: 310-475-6033



### **Vermont Corridor Apartments (fka 433 Vermont Apts)**

433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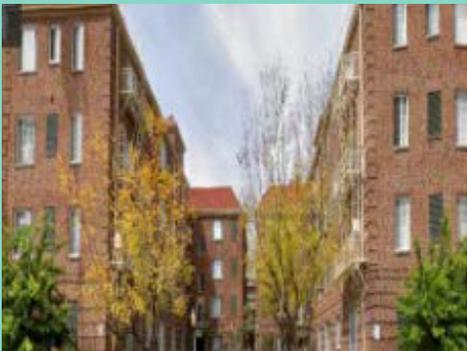
Total Site Units: 72

Total Mobility Units: 0

Total Hearing / Vision Units: 0

이메일: Vavina@jsco.net

전화: 310-469-4189



### **Las Mariposas aka. Tri-City Apartments**

511 S MARIPOSA AVE.  
LOS ANGELES, CA 90020

이메일: Lasmariposas@barkermgt.com

전화: 213-387-1063

이외에도 LA카운티 주택국 사이트([www.housing.lacounty.gov](http://www.housing.lacounty.gov))에서도 저소득 아파트 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ousing.LACounty.gov**  
LOS ANGELES COUNTY HOUSING RESOURCE CENTER

English | Español | Select Language

FIND RENTALS FOR SALE ADD LISTINGS LO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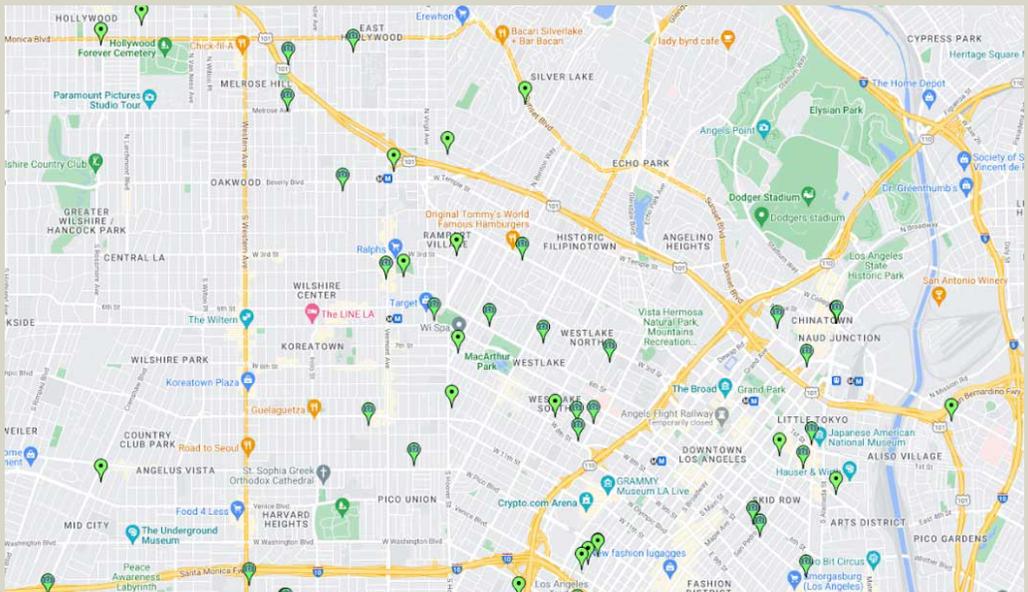
## Find your new home

Search Rentals by City, County, or ZIP Code

**Protect yourself from scams!** Remember: even with social distancing, NEVER wire or send money using an app. Do NOT call spelled-out phone numbers ("seven-oh-four," etc.). Only pay after you have met the landlord and verified they have a right to rent the unit. [Find out how](#) to detect a scam and report a listing.

Please note, our call center staff is working remotely until further notice. We are still available Monday-Friday, 9 a.m. to 8 p.m. Eastern Time. You may experience longer call times, but we are committed to assisting you.

웹사이트 중간에 있는 '새 집 찾기(Find your new home)'에서 원하는 도시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저소득 아파트를 검색한 지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록색 표시는 입주 가능하거나 대기자 명단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이 지도에는 표시돼 있지 않지만 빨간색 표시는 현재 입주할 수 없거나 대기자 명단이 이미 다 찬 곳을 뜻합니다.

대기자 명단이 열려 있는 아파트를 찾았다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아파트 측에 전화를 걸어 이름이 명단에 아직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해도 신청해놓은 아파트에 이사한 주소를 업데이트해야지만 대기자 명단에서 이름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측이 대기자에게 아직도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지 묻는 편지를 보내는데 답이 없으면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후, 입주자는 정기적으로 세금보고서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자격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치매 전문 요양시설 Memory Care Units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시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치매질환 관리를 중점적으로 교육받은 직원과 의료진이 24시간 밀착 케어를 해주고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그리고 소규모 그룹활동 등이 제공됩니다. 메디칼이나 롱텀케어 보험으로는 커버가 되지만 메디케어만 있으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호스피스 Hospice Care

환자 수명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6개월 이하로 내려졌을 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소셜워커, 목사나 신부 등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 고싶다고 하면 의료기구가 집으로 옮겨지고 출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비용은 메디칼과 메디케어로 풀 커버됩니다.

이름	연락처
<p>가주 호스피스 케어 Compassus Hospice Care</p>	<p>700 N. Brand Blvd., #830 Glendale, CA 91203 www.compassus.com 전화: 310-341-4055</p>
<p>시에라 호스피스 케어</p>	<p>3660 Wilshire Blvd. #225 Los Angeles, CA 90010 www.sierra-hospice.com 전화: 213-380-1100</p>
<p>에덴 호스피스 케어</p>	<p>3333 S. Brea Canyon Rd. #107 Diamond Bar, CA 91765 www.edenhospicecare.com 전화: 213-596-9119</p>
<p>에버그린 호스피스 케어</p>	<p>17215 Studebaker Rd. #100 Cerritos, CA 90703 www.evergreenhospicecare.com 전화: 213-596-9119</p>
<p>엔젤스 호스피스 케어</p>	<p>1420 Crest Vista Dr. Monterey Park, CA 91754 전화: 323-528-5633</p>
<p>엘림 호스피스 케어</p>	<p>690 Wilshire Pl. #307, Los Angeles, CA 90005 www.elimwellcarehospice.com 전화: 626-793-7511</p>
<p>호프 인터내셔널 호스피스</p>	<p>20705 S. Western Ave. #112 Torrance, CA 90501 전화: 310-782-7070</p>



Kheir Clinic  
이웃케어클리닉  
Kheir Community Clinic  
Clínica Kheir

## 원스탑 서비스



# 최병태 소셜워커에게 물어보세요

- ◆시니어메디칼(Medi-Cal) ◆메디케어
- ◆노인 및 저소득 아파트/섹션8 ◆푸드스탬프(CalFresh)
- ◆소셜연금(SSA) ◆웰페어/현금보조(SSI, SSP, CAPI)
- ◆장애보험&연금(SSDI) ◆자택간병서비스(IHSS)
- ◆기타 사회복지 및 저소득층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전화로 상담합니다.

예약하시면 상담시간에 맞춰

저희가 전화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예약 필수\* \*전화 상담\***

**예약&문의: 문자 (213) 632-5521**

#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위치 및 연락처

## 대표전화 213-235-2800 문자 213-296-0120

### 6가 클리닉

3727 W. 6th St.,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 환자지원서비스부 (PRD)

3727 W. 6th St., Suite 230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637-1080 문자 213-632-5521

하버드



6가

### 월셔 클리닉 120호 + 치과

3255 Wilshire Blvd., Suite 120  
Los Angeles, CA 90010

### 월셔 클리닉 100호 + 검안과

3255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0

### 약국 (coming soon)

3255 Wilshire Blvd., Suite 110  
Los Angeles, CA 90010

뉴햄프셔



월셔

### 치과 & 검안과

3755 W 6th St., Suite 113 & 114  
Los Angeles, CA 90020

호바트

하버드



6가

월셔

### 버몬트 양로보건센터

3030 W. 8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389-6565

뉴햄프셔

버몬트



8가

### 미래 양로보건센터

717 S. Western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224-8888

웨스턴



7가

8가



이웃케어 6가 클리닉



이웃케어 윌셔 클리닉 100호 & 120호



이웃케어 버몬트 & 미래 양로보건센터



**Kheir Clinic**  
**이웃케어클리닉**  
**Clínica Kheir**

**in Koreatown**  
**Los Angeles California**

# 커뮤니티 가이드

##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길잡이

